

CPR

사형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Ⅱ

1. 90년대 한국사회, 지존파, 사법정의, 참여연대.사법감시
토론회 자료집
2. 사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한인섭
3. 사형제도폐지 정책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권
위원회 사형제도폐지위원회
4. 사형제도에 관한 범시민공청회; 한국의 사형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 국제앰네스티 등
5. 사형없는 세상을 향하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6. 사형없는 세상을 향하여 2, //
7. 국가의 살인행위-사형제도 등, 국제앰네스티

인문관		
구분	유기	비고
		16

참여연대 · 사법감시 토론회 자료집

90년대 한국사회 지존파, 사법정의

이화여대 인문관 대회의실
1994년 11월 18일 (금) 오후 4시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94.		
11.18		

. 자 료 집 목 차 .

- 지존파 사건 그 사회적 원인. (이현희;사회학 박사)	3
- 언론보도의 선정주의를 거부한다. (황성민;바른언론을위한 시민모임 사무국장)	6
- 신고자에 대한 보호 - 그 문제점과 개선점. (김 당;시사저널 기자)	7
- 강력범죄등 처벌과 사법정의. (차병직;변호사, 센타 실행위원)	12
- 사형제도의 문제점, 각국 사형제도의 현황. (고원태;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부지부장)	15
< 짚 고 자 료 >	
- '지존파'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장	24
- '지존파 검거' 서초서 고병천 형사반장 인터뷰 (한겨레 21;10월 6일字)	31
- '지존파 신고'한 이선영씨 인터뷰 (시사저널;10월 6일字)	33

< 별 첨 : 사법감시 토론회 1 >

11월 11일, 참여연대 회의실

특권층과 재벌에 무기력한 검찰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

- 12.12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법적 검토 (손동권;경찰대 법학과 교수)	37
- 우리들의 일그러진 검찰 ; 검찰권행사의 형평성에 관하여 (이석범;변호사)	40

90년대 한국사회

지존파, 사법정의

<발제내용 및 토론자>

사회 ; 한인섭(법학교수,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 1. 지존파 사건의 검거 경위 김재덕 (서초서 형사과장)
- 2. 지존파 사건을 통해 본 강력범죄의 특성과 그 사회적 원인. 이현희(사회학 박사)
- 3. 지존파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태도를 짚어 본다. 황성민(바른언론을위한 시민모임 사무국장)
- 4. 신고자에 대한 보호 - 그 문제점과 개선점. 김 당(시사저널 기자)
- 5. 형사재판은 과연 바람직하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진록(변호사, 지존파 1심담당)
- 6. 특정범죄등 처벌과 사법정의 차병직(변호사, 센터 실행위원)
- 7. 사형제도의 문제점 고원태(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부지부장)

· 장 소 : 이화여대 인문관 대회의실
(후문 학관 옆 신축건물)

· 시 간 : 11월 18일(金) 오후 4시

지존파 사건 : “부”를 향한 조직화된 범죄인가? 소외그룹의 “분노”의 표출인가?

이현희(사회학 박사)

최근 박한상존속살인사건, 지존파살인사건, 택시기사 은보현 납치, 살인사건 등 잇따른 강력 사건들은 그 범행수법의 잔인성, 범행대상의 무차별성, 죄의식의 부재 등 그 특성에 있어 이제까지의 범죄현상과 구분되는 몇 가지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규범적 특성, 그리고 사회변화에 따른 각 사회제도의 재적응이라는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I. 지존파 사건의 범죄특성

지존파의 범죄행위는 강력범죄의 새로운 변화추이를 보여주는 몇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우선 강력범죄의 집단화경향이다.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단시간에 계획되어 계획의 치밀성이 떨어지고 우발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지존파의 범죄행위는 장시간의 사전계획에 의해 범죄조직을 형성하고 범행장소와 대상, 방법을 모색하는 범행에 있어서의 합리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살인습습, 지옥훈련이 포함된 고된 집단훈련과정을 통해 한편으로는 범죄기술을 습득하고 한편으로는 '가진 자에 대한 보복'이라는 조직강령을 설정해둠으로서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직을 강화시켜나가는 치밀하고 합리적인 계산에 의한 범죄행위이며 둘째로 범죄기술수준의 향상이다. 지존파가 사용하거나 마련하고자 했던 장비들을 살펴볼 때 사회적 기술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범죄장비의 기술수준도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기밀매 시장이 서울과 지방에 형성되어 있음을 볼 때 앞으로의 강력범죄의 범행수법이 현재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셋째로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유출과 사생활침해, 이에 따른 새로운 범죄유형과 수법의 등장 등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범죄유형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범죄예방정책의 수립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강력범죄에 있어서 재범율의 증가이다. 강력범죄의 50% 이상이 재범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국가교정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II. 지존파 사건의 사회적 원인

지존파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따라서 이들의 범행동기의 사회적 원인에 대해서는 정신분석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등 여러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었다. 지존파의 심리성향이 영웅주의, 니클로펠리아, 광신적인 종교집단의 이상성향을 보인다는 정신분석학적 분석에서부터 구성된 대부분이 편부모가정 출신임을 들어 가족해체가 범

죄발생원인의 중요한 요인임이 지적되고 가정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으며 범죄기술을 습득하게 된 주요통로인 소설, 영화 등 매스컴의 중요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한편으로 인명경시, 이기주의라는 사회적 도덕규범의 와해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이러한 병리현상의 배경이 된 우리 나라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에 있어서의 부의 불균등분배, 왜곡된 소비문화 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들 논의들은 대체로 지존파가 보여준 무차별적인 적대감과 잔인성, 도덕적 무책임성, "가진 자에 대한 적대감"에 초점을 두어 지존파사건을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들은 지존파 문제를 이해하는데 각각 타당성 있는 설명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존파사건이 등장하였을 것이다.

이중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지존파가 설정해 놓은 두 가지의 목표이다. 그들은 크게 두 가지의 범죄목표를 조직강령에 세워두고 있는데 하나는 돈 있는 자로부터 "10억이라는 돈을 모을 때까지"는 도구적인 목표와 다른 하나는 "가진 자에 대한 복수"라는 심리적 목표이다. 이들 두 가지 범행목표에 함께 작용하는 사회환경적 배경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지난 30년간 한국사회의 자본주의 발전과정과 그 결과로서 탄생한 현재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범죄행위에 대한 머튼(R.K. Merton)의 분석대로 사회가 제공하는 문화적인 가치(우리사회의 경우는 경제적 부)는 사회의 모든 계층, 모든 집단에 수용되는데 반해서 그 가치 도달할 수 있는 합법화된 제도화된 수단은 계층적으로 차별적 분포를 보이는데서 그 격차(아노미)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범죄행위가 선택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문화적인 가치(재산적 가치)를 얻고자하나 합법적인 수단(교육, 직업, 가정배경 면에서의 가능성)이 없을 때 합법적인 수단에 대한 사회 규범적인 기준을 수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구조의 어느 사회에서든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특히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지존파의 사건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듯이 합법적인 수단에 대한 지배규범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신들의 행위를 규범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를 가진 계층도 합법적인 수단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이들 가진 자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구조이며 지도층이 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범죄행위를 유발시키는 요인이면서 한편 그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존파의 경우에도 "부"를 회복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에 의한 완전범죄의 형태를 띠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J. Braithwaite의 범죄분석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의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등의 구조적 요인과 지배규범의 정당성이라는 사회적 헤게모니의 두 가지 층위에서 범죄발생을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구조는 기회구조가 제한된 계층의 범죄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데 이때 사회적 헤게모니의 작동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분노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사회에나 사회적 헤게모니는 완전하게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균열지점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그 균열지점이 클수록 범죄행위에 정당성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지존파의 경우는 사회를 향한 합법적 기회구조가 제한된 소외계층이 다른 사회적 수단(폭력)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사건이며 지배계층에 대한 분노라는 심리적 요인이 그 범죄행위에 실제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그 행위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로 사용되었던지 간에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규범적 혼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우선 사회규범체계의 혼란을 수습하는 일이다. 이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부의 평등한 분배정책 만큼이나 사회지도층의

정당성, 합법성을 확보하는 사회 규범적인 통합이 필요함을 말한다. 이에 연관되어 언론보도에 서 범죄에 대한 공식적 담론구성에서의 문제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지존파에 대한 언론보도는 지존파의 범죄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편중됨으로써 우리사회의 규범적 합의를 지나치게 낮게 부각시키고 오히려 규범적 아노미상태를 부추이는 결과를 낳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범죄피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은 실제적인 범죄발생과는 다른 차원에서 구성되는 또하나의 사회현실임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범죄기술을 습득하는 통로인 대중매체에 대한 검토,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관리의 문제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 가정교육, 학교 교육 등을 통한 인성교육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지존파사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지존파사건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병리현상의 극단적 표현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문화적 격차의 결과로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머튼의 이론을 적용하면, 지존파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획득할 수 없는 소외계층에 속한 개인들이, 사회적 불평등과 문화적 격차로 인해 합법적인 수단을 포기하고 범죄행위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존파의 범죄행위는 사회적 헤게모니의 약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지배계층이 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범죄행위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면서, 한편 그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존파의 경우에도 "부"를 회복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에 의한 완전범죄의 형태를 띠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J. Braithwaite의 범죄분석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의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등의 구조적 요인과 지배규범의 정당성이라는 사회적 헤게모니의 두 가지 층위에서 범죄발생을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구조는 기회구조가 제한된 계층의 범죄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데 이때 사회적 헤게모니의 작동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분노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사회에나 사회적 헤게모니는 완전하게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균열지점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그 균열지점이 클수록 범죄행위에 정당성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지존파의 경우는 사회를 향한 합법적 기회구조가 제한된 소외계층이 다른 사회적 수단(폭력)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사건이며 지배계층에 대한 분노라는 심리적 요인이 그 범죄행위에 실제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그 행위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로 사용되었던지 간에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규범적 혼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언론보도의 선정주의를 거부한다.

황성민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사무국장)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일련의 흉악사건들로 인해 사회전체가 공포에 빠져들고 있다. 반인륜적인 지존과 연쇄살인사건, 도난택시 부녀자 납치 살해사건 등을 연일 접하면서 국민들은 수사기관의 무기력에 대한 분노와 치안부재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어느 순간 나 자신이 범죄의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문밖으로 나서기도 어려울 정도다.

이러한 사회적 공포현상은 엽기적인 사건 자체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범죄사건을 무차별적이고 경쟁적으로 다룬 언론보도의 선택주의(선정주의)에서 상당부분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언론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범인들을 인터뷰했으며, 가장 자극적인 말(인육을 먹었다, 어머니를 못 죽여 한이다, 모두 죽이려 했다 등)만을 강조했다.

2. 암매장하는 현장검증, 사체 발굴 장면 등을 과다하고 지나치게 보도함으로써 흉측한 모습을 여과 없이 노출시켰다.

3.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주변상황들을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늘어놓았다.

4. 잔인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사건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여 모방범죄를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 범인들이 모방한 것으로 보도된 책(야인, 뺑끼통)과 영화(지존무상)는 이미 베스트셀러화되고 있다.

5. 살해 내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름을 무차별 노출시켜서 인격권을 침해했다. 반인륜적인 살인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 역시 비윤리적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언론은 경쟁적인 선정주의와 상업주의에서 벗어나, 사회병리현상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치유방안을 제시하는 보도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신고자에 대한 사실적,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 당 (시사저널, 사회부 기자)

0. 문제의 제기

- 흉악성·잔인성에서 범죄수법을 몇십년 앞당긴 사건 (검찰의 「범죄백서」 발간)
- 영화나 소설 속에서 등장한 범죄 유형을 실행에 옮긴 사건 (「지존무상」, 「양들의 침묵」, 「야인」, 「뺑끼통」 등)
- 독자적 취재의 어려움 (독자·시청자의 관심과 수요가 큰 상황에서 현장검증을 따라다 니며 범인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추수적 보도)
- 범죄 행위의 충격성, 운 좋은 '일망타진'으로 신고자의 문제는 덮여버림
- 신고 이전의 문제점 (지존파의 경찰에 대한 증오감, 검문검색의 허술함, 초동수사의 허술함 등) * 생략

1. 사실적 문제점

1-1. 수사기관(주로 경찰)의 문제점

- 신고자에 대한 문전박대(이른바 관할권의 문제) : 범죄사건 신고 접수 기피
- 경찰의 뒤늦은 출동 : (추석연휴, 교통난 등 핑계) 신고 이틀만에 출동
- 신고자의 검거현장 동행 : (신고자이자 공범 혐의자라는 이중 지위) 신고자의 현장 노출 등 아슬아슬한 순간들
- * 소 뒷걸음치다 쥐 잡기식 체포 (목적담)
- 신고자 보호는 말뿐 : (범인 검거전과 검거 후 그리고 공범의 잔존 가능성) 경찰의 보호는 단 이틀, 그것도 언론으로부터 따돌리기 위해서
- 신고자의 이중 고통 (검정에서의 중복 진술) :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3회 진술, 차 안에서 밤새기, 대기실에서 몇 시간 기다리기는 다반사

1-2. 언론(기자)의 문제점

- '이웃사촌'의 유감전화 : 신고자(피해자) 보호의식의 부재
- 일단 쓰고 보자 : 뒷감당은 나중에

1-3. 신고자(의식)의 문제

- '나약한' 시민 :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에 무감각
- 언론하고 물어봐서 득될 게 없다? : 경험칙과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2. 법적 문제점

2-1. 현행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위한 법적 장치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 6,7,8조 : △보석 등의 취소 △증인 신분 안전조치 △출판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 5조의 9 :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 범죄 피해자 구조법(피해자 구조법) 제 3조 1항 : 일반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법(87년 제정)에 신고자·증인의 피해에 대한 구조를 추가한 것
- * 이상의 법률(특강법), 조문(특가법), 항목(구조법) 등은 모두 90년 12월 30일 제정, 신설, 개정된 것임

2-2. 법적 장치의 유명무실

- 앞에서 보았듯 아무것도 기능하지 못함(특강법)
- 홍보의 부족, 절차의 까다로움(피해자 구조법)

3. 개선방향

3-1. 법적 장치의 개선과 강화

- 범죄 신고자 보호법 제정
- 범인 식별실(라인 업 제도) 설치

3-2. 제도보다 운영(수사기관의 인식 변화 등)이 더 중요하다.

- 국립경찰다운 국립경찰 : 실질적 공조수사 체계(광역수사 체계) 등을 운영
- 경찰(기자?) 포상제도의 개선 : 실적만큼 과정을 증시해야(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수사팀 순으로 포상, 특종 개념도 속보성만큼 보도의 질을 증시해야)
- 문민시대에 걸맞는 경찰(검찰) : 인식의 변화, 행태의 변화 없이는 공허한 외침뿐

4. 결론을 대신한 한 여론조사의 의미

<중앙일보> 9월 30일자 치안관련 여론조사(조사개요: 9월 28일, 전화조사, 1천명, 전국 20세 이상 인구비 의한 전화번호부 무작위 추출, 95% 신뢰 허용 오차± 3.1%)

* 조사시점은 지존파 및 은보현씨. 검거 직후

☑ 지난 1년간 본인이나 가족의 범죄 피해 경험률 :

①도난 14.5% ②피한의 주거침입 8.9% ③타인으로부터의 폭력 4.1% ④전화 폭력 40.2%

; 범죄 피해 경험이 없는 국민은 46.1%

☑ 범죄 관련 신고 경험

○있다 30.3%(남자 26.2%, 여자 14.3%); 여성의 경우 신고피해의식이 남자보다 더 크다.

☑ 신고시 경찰의 태도(신고경험 있는 응답자의 경우)

①불만 65.2% (매우불만 17.7%, 대체로 불만 47.5%) ②만족 31.9%(매우만족 5.6%, 대체로 만족 26.3%); 불만이 만족보다 두배 이상 높다.

☑ 경찰의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

①잘 보호해 주지 못한다. 70.5% ②잘 보호해 준다 25.4%; 신고자의 신분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고의식 고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강력범죄 사건에서 낮은 신고율→낮은 검거율→높은 범죄율→낮은 신고율의 악순환이 우려됨

☑ 범죄신고 기피율이 높은 이유

①보복우려 27.0% ②경찰이 오라고 하는 등 생활에 지장 23.6% ③시민의식 부족 21.8% ④신원이나 사생활 노출 16.5% ⑤경찰의 수사능력 불신 8.3%; 시민의식의 부족(21.8%)보다 제도 및 경찰의 문제점(75.4%)이 훨씬 더 크다. 일반 국민들은 신고해 보았자 괜히 사생활이 노출되고, 오라 가라 귀찮기만 하지, 어차피 잡지도 못할 것이라는 예단(또는 경험)을 갖고 있다. 신고의 실익(직접 보상이나 신고하면 반드시 잡힌다는 기대 등)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보복, 생활지장, 사생활 노출 등)만 크다. 결국 현행 신고자 보호장치가 좀더 개선-강화되고 경찰이 지금보다 '세배' 이상 친절해지지 않는 한 앞서 지적한 악순환의 고리는 끊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고자 푸대접이 강력범죄 키운다

피해자·증인 보호 법적 장치 유명무실... 수사기관 인식 변화 앞서야

또 호떡집에 불이 났다. 사회에 대한 증오범죄 양상을 띤 이른바 지존과·온보현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한 출소자의 보복 살인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때마침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치안력 부재와 교도 행정의 미비점 그리고 범죄 피해자와 증인 보호의 허술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청장·내무부장관 인책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경찰은 신변보호대 신설을, 검찰(법무부)은 가칭 '범죄 신고자 보호법' 제정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생활개혁 관계 장관회의에서도 '범죄 신고자 보호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내년부터는, 정부 당국의 기대대로 보복 범죄가 줄고 범죄 피해자와 증인의 신고는 늘어날까. 결론은 '아니올시다'이다.

보복 살인은 "신문에 날 일"

우선 강간죄로 3년6개월을 살고 나온 용의자 김경록씨(26)가 10월10일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직장 상사의 가족을 살해하거나 살인 미수에 그친 사건은, 증인에 대한 보복 살인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나 한편으로는 극히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점이다. 경찰과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90년 이후 범죄로 인한 사망자는 한 해 평균 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 같은 출소자의 보복 범죄로 인한 사망자는 천명에 한명꼴이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또 법무부 집계 따르면 보복 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44명을 적발해 32명을 구속했고, 올해에도 8월 말 현재 29명을 적발해 23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범죄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못하게 하거나, 유리한 거짓 증언을 하게 할 목적

현행 피해자·증인 보호장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 9(보복 범죄의 가중처벌):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또는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허위의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상해·폭행·감금·협박 등의 죄를 범할 때는 가중처벌함.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6조(보석 등의 취소):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친족 또는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에게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때 법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음.
- 제7조(증인 신변안전조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생명·신체의 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인정되는 때는 증인의 요청으로 또는 검사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제8조(출판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살인죄 등을 제외한 특정 강력범죄(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단체 조직 등)로 수사·심리 중인 사건을 신고·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생명·연령·주소·직업, 용모 등에 의해 그가 피해자 또는 신고·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건을 언론에 공표하지 못한다(단,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
- ◆범죄 피해자 구조법(구조법) 제3조 1항: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때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 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주:이상의 법률(특가법), 법조문(특가법), 법항목(구조법) 등은 모두 90년 12월31일에 각각 제정, 신설, 개정된 것임.

으로 한 폭행이나 협박이지, 이번 같은 출소 후 보복 살인은 말 그대로 '신문에 날 일'이라는 것이 법무부 관계자의 말이다. 물론 '신문에 날 일'은 4년 전에도 있었다. 90년 6월13일 당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앞길에서 법정 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증인 임용식씨(33)가 폭력조직 행동대원들로부터 칼에 찔려 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 앞 대로에서 국가 공권력을 훼손당한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법무부와 검찰은 가칭 '피해자 등의 보호법'을 제정하겠다는 등 지금까지 대책 마련에 법석을 떨었다. 물론 피해자 보호법은 아직까지 시안조차 마

련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범죄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보호 장치가 범죄계에서 본격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이다. 그 결과는 왼쪽 표와 같다. 그렇다면 이 같은 법적 장치만으로 신고·피해자 및 증인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것일까. 이 또한 대답은 '아니올시다'이다.

우선 '구조법'이 시행된 지난 6년 간(88.7~93.12)의 범죄 피해자 구조를 보면, 총 4백1건에 21억원을 지급했을 뿐이고 그 중 특히 수사 단서 제공이나 증언으로 인한 보복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은 전무한 형편이다. 그 까닭은 구제 절차 요건이 까다롭고 피해 배상액(사망시 최고 천만원)이 적은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피해자 권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는 곧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자를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으로만 이용할 뿐 피해자의 '원상회복 권리'에 대해서는 알려주지조차 않을 정도로 피해자 권리에 무감각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사실 '특가법'이 신고자·피해자·증인에 대한 보복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것도 그 죄질 때문이라기보다는 형사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갈수록 흉포화·지능화하고 특히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해결에서 피해자·증인의 증언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외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법정 증언에 대한 강단의 살해 위협과 관련한 최근의 의회 청문회에서, 워싱턴 검사들은 살인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이 경찰에 협조하지 않아 전체 살인 사건 가운데 30~35%가 미제 사건으로 처리된다고 호소했다.

강력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와 증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려고 제정한 '특가법'의 경우에도 본래의 입법 정신이 망각된 채 신고자·증인에



90년 동부지원 앞 보복 살인 현장 검증: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및 증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됐다.

대한 보호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기는 마찬가지이다. 피해자의 용기있는 신고가 없었더라면 미제 사건으로 남았을지도 모를 지존과 사건은 그 문제점을 잘 드러내 준다. 특히 사건 해결에 결정적 공을 세운 이선영씨(가명·27)는 피해자이자 신고자이자 증인으로서 지금 정부 당국이 보호하려고 하는 범의의 모든 요건을 한꺼번에 갖춘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가 처리야 했던 다음과 같은 '신고의 대가'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

△이씨가 찾아가던 서초서는 처음에 관할권을 내세워 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이씨에게 관할 경찰서(장수서)로 가서 신고하라고 했다(이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차 편의 제공을 거부당해 신고를 포기하려고 했음) △이씨는 범인 검거 장소에 동행해야 했고(마주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범인 체포 후 지서에서, 압송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서초서와 검찰에서도) 범인들과 마주쳐야 했다 △피해자 및 참고인 자격으로 비슷한 진술(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3회)을 되풀이해야 했다 △경찰에서 한 진술과 관련해 차 안에서 이틀이나 밤을 새워야 했다 △신고 이후 범인 검거까지의 사흘 동안 경찰은 신고자를 전혀 보호해 주지 않았다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주소를 노출함으로써, 일부 언론이 가족에

게 피해 사실을 알렸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사진을 본인 허락 없이 게재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했다(이 때문에 이씨 가족은 곧 이사갈 예정임) △이씨는 앞으로도 법정에서 피해자 및 증인 자격으로 진술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질 신문도 감수해야 한다 △이씨는 그 과정에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신고의 대가' 처른 지존과 피해자 이선영씨

사정이 이런데 어떤 용기 있는 자가 고통과 불편함과 사생활·인격의 침해를 무릅쓰고 범죄 사실을 신고하려 들까. 검찰은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은 검찰의 기소권 의주의로 호를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반대가 예상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의 이호중 선임연구원은 '범죄 피해자 보호는 형사절차상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인권 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양대 이념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연구원은 또 새로운 신고자·증인 보호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도보다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이 신고자·증인을 보호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보호 그 자체보다는 신고와 증언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양심을 품은 사람을 경찰이 24시간 지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증인을 보호하는 데는 어차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목격자나 피해자가 신고나 증언을 기피하는 것은 보복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겪어야 할 이증의 고통과 인격권의 침해 때문이다(강간 등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받는 첫 질문은 여전히 '첫 경험은 언제였느냐'라는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범죄에서 제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으리만큼 제범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에 비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신분으로 '푸대접'을 겪은 사람이 다시 경찰서를 찾는 일은 드물다).

한 범죄학자는 "수사기관이 지금보다 두배 더 친절해지면 성폭력 등 강력범죄 검거율도 두배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돈 안들이고, 범을 안고치고도 할 수 있는, 피해자 권리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 변화라는 지적이다. ■

김 담 기자

강력범죄 등 처벌과 사법정의

차병직 (변호사)

1. 강력범죄와 적대적 특별형법

강력범죄란 말은 실정법에도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법적 용어 이전에 사회적 언어이다. 범행의 방법이 비인간적으로 잔인하고 포악하며 파괴적이고,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회복 불능의 법익침해를 당하게 하는 범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 정책적 목적에 기하여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법정형을 무겁게 하는 특별형법의 양산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1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19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1983), 환경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1991),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1994), 그리고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1990) 등이다.

이러한 특별형법들은 그러한 유형의 범죄가 사회문제화 될 때마다 그 대안으로 계속 제정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특별형법은 잠재적 범죄자인 사회적 소외자들과 잠재적 피해자인 선량한 시민을 날카로운 대결구조 속으로 몰아 넣는다. 그리하여 일단 강력범죄의 혐의자로 낙인찍히는 자는 모든 시민의 '적'으로 간주하는 정책이 수행된다. 선한 시민과 악한 시민의 적대적 대결구조가 각종 특별형법의 기본적인 이해의 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특별형법들은 범죄자로 낙인찍힌 자를 비례성원칙(책임원칙)에 반할 정도로 가혹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범죄 혐의자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보다 이미 범죄자로 취급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특징을 지닌 형법을 학자들은 적대적 형법(Feindstrafrecht)이라 한다.

2. 사법정의의 의미

사법에 있어 정의란 절차상의 적법절차와 결론으로서의 바른 판결을 말한다. 바른 판결이란 무고한 자를 유죄로 판결하는 이른바 오판이 없어야 하고, 다른 한편 유죄가 분명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의 책임 정도에 맞는 적절한 형벌을 부과하여 형평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결국, 사법정의란 형사재판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의 기본이념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재판주의 추구하에서 입증의 방법과 그 정도에 따라 현실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가끔 형식적 진실만을 밝히는데 그치기도 한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적 진실과 법원이 변론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해 확인한 형식적 진실과의 사이의 간극을 가능한 좁히려는 의도로 여러 방안이 고안된다. 형사소송법상 논의되는 모든 제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수단이다(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증거법칙, 상소와 재심제도).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사법정의 구현을 위한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중의 하나이다. 그

러나 신속한 재판은 법원이나 검찰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애당초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 원칙이다(헌법상 기본권). 집중심리제도나 간이공판절차 등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 중의 하나이다.

3. 집중심리제도

집중심리제도는 가능한 심리를 짧은 시간 내에 한꺼번에 해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관으로서는 신선하고 확실한 심증을 얻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신속하게 재판을 받음으로써 재판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집중심리제도는 독일과 달리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다. 단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0조0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즉,

- i) 심리에 2일 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매일 계속 개정(계속심리주의)
- ii) 특별한 사정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

그러나 집중심리제도는 양당사자들이 철저한 사전 준비를 전제로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간이공판절차

형사소송법상 간이공판절차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신속한 심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그 취지는 소송경제의 이념에 있다.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경우 전문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증거능력에 대한 특칙), 증거조사를 정식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증거조사에 대한 특칙). 판례는 공판조서 일부인 증거목록에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합이라고 표시한 경우도 상당한 조사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간이공판절차의 예외로 특강법과 성폭력범죄특별법이 있다. 이 경우 합의부 관할사건임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식공판의 예외인 간이공판이 확대되어 원칙과 예외의 균형이 깨뜨려질 우려가 있다.

5. 강력범죄 등의 문제점

가. 집중심리제도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강력범죄 혐의자를 시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신속히 형을 확정하고 집행하여 대국민적 위화효과(일반예방효과)를 얻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와 대비할 경우 너무나 비이성적이다.

나. 간이공판절차

원칙에 대한 예외가 너무 확대될 위험이 있다. 특별형법의 적용이 형법적용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그 이전에 이미 실무에서 관행상 합법화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러하다.

소송경제의 이념과 자원배분의 합리성이란 미명 하에 실제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살아 있는 정보를 놓치기 쉽다.

특히, 간이공판절차에의 유혹으로 인하여 법정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백율을 높이는 행동방식을 선호하게 할 수 있다(간접적 강요).

사형제도의 문제점

I. 사형폐지 운동의 의문점에 대한 엠네스티의 답변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해서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찬반이론 역시 분명히 구분되는 실정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글은 일반 대중들이 사형폐지 운동에 대해 느끼는 가장 흔한 질문들을 모아 엠네스티가 답변의 형식으로 그 입장을 정리한 자료이다.

1) 사형은 폭력적 범죄자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 여태까지 사형제도와 범죄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으나 사형이 여타의 형벌과 비교해 특별한 억제효과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난 적은 없었다. 1980년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제6차 유엔의회'에 제출된 유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사형의 억제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형의 효과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지는 못하였다." 1949-53년간의 '사형제도에 관한 영국왕립위원회'는 유럽과 영연방국가들의 광범위한 조사자료를 토대로 한 보고서에서 "우리가 검토한 어떤 자료에서도 사형폐지 후 살인율이 증가했다거나, 사형부활로 살인율이 감소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1983년의 한 연구는 사형을 폐지한 14개국의 단기, 중기, 장기의 살인율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조사대상국의 절반 이상에서 사형폐지 후 살인율이 감소했다고 나타났다.

☞ 몇몇 연구에 따르면 사형집행 직후 살인율이 실제로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미국의 경우, 1092-63년간 뉴욕 주의 철간 살인율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형집행 다음달에 평균 두 건의 살인사건이 더 발생하였다.

☞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많은 범죄들이 엄청난 감정적 고조상태, 공포 또는 약물과 알콜의 영향 하에서 발생되었으며, 이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범죄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기 마련이다.

2) 사형이야말로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 아닌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였으므로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 할 범죄자들도 있지 않겠는가?

☞ 국가는 죄인을 처형시킬 권리를 결코 가질 수 없다. 처형이란 국가가 법의 이름을 빌려 고의적이고도 용의주도하게 한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이런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의경심이 줄어들게 된다.

☞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는 흔히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범인에게 책임소재를 가볍게 지우고 있다.

☞ 범죄학자들은 오랫동안 폭력범죄는 흔히 빈곤, 실업, 알콜중독, 결혼가정 등과 같은 여

타 사회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인정해왔다. 이런 문제들은 사형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3) 죄수를 사형시키는 대신 종신토록 교도소 내에 가두어 두는 것이 더 가혹하지 않은가?
 - ☞ 엠네스티는 사형제도가 극단적으로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라고 생각한다. 처형은 명백하게 가혹한 처사일 뿐 아니라 처형을 기다리는 과정 자체도 잔혹한 고통이다. 그 과정은 종종 살아있는 죽음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엠네스티가 입수하였던 고문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가장 공포스러운 고문기법은 처형의 위협이라고 한다.
 - ☞ 법률상 종신형이라도 재심의 가능성이 보장되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석방을 고려하는 나라들이 많다.
 - ☞ 범죄자의 교화와 갱생은 오랫동안 형사정책의 기본 목표로 인정되어 왔다. 다른 형벌과는 달리 사형은 갱생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다.

4) 사회의 기반 그 자체를 위협하는 폭력주의자, 테러리스트에 대해선 사형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 자신들의 대의명분을 추구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흔히 그 명분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 사형제도에 의존하게 되면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과 그 대의명분에 대한 순교자로 행세하게 된다. 이런 경우 사형은 범죄의 억지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유인책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5) 엠네스티는 사형이 들이킬 수 없는 것이며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한 사법체제 내에서 항소의 권리가 보장되고 증거주의의 기준이 철저히 지켜진다면 무고한 사람을 처형시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 않을까?

- ☞ 사형은 최종적인 것이며 들이킬 수 없는 형벌이다. 무고한 사람이 일단 처형되어 버리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사형이 형벌의 한 형태로 남아 있는 한 이런 종류의 위협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처형된 후 무고함이 밝혀진 사형수의 사례가 상당히 많다.
- ☞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관을 받고 사형선고 후 처형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무고한 사람을 처형시킬 현저한 위협이 존재한다. 심지어 사형선고 후 수시간 내에 처형에 행해져서 항소나 사면청원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 나라도 있다.

6) 사형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 ☞ 가장 발달한 엄격한 형사사법체제 하에서도 선고 과정은 피고의 경제력, 인종, 종교, 대중의 사형지지도 등과 같은 요소에 영향받기 마련이다. 똑같은 경로의 범죄, 그리고 동일한 상황의 범죄라 해도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당하지 않아도 한다. 또한 미국 및 여타의 여러 나라에서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으로 기소된 사람들 중 실제 사형을 선고

받는 죄수들은 비교적 소수이다.

7) 국민 여론이 사형을 지지하는 경우 어떻게 정부가 사형을 폐지할 수 있겠는가?

- ☞ 여론조사는 자칫 오도될 가능성을 항상 가진다. 또한 대중들이 언제나 전적으로 사실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론조사가 합리적으로 되기 위해선 교육이 필요하다. 사형폐지 운동과정을 통하여 엠네스티는 사형제도에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도 일단 구체적인 사실과 논리를 접하기만 하면 그 주장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
- ☞ 엠네스티는 사형이 인권유린의 한 형태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정치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은 대중여론을 환기시키고 제도함으로써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여러 나라에서 정치가들이 사형제도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사형제도의 부활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지만 대중의 존경을 잃지 않았던 사례가 많다.

8) 추상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하기란 쉽다. 그러나 자신의 가까운 친지가 살해되었다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

- ☞ 사형시킨다고 해서 살해된 피해자의 생명을 되찾지도 못하며 그 가족들의 손실을 덜어 주지도 못한다. 범죄피해자의 친지들이 가지는 절박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사형은 죄수의 가족에게도 또한 슬픔과 고통을 야기시키며 폭력의 악순환만 더할 뿐이다. 그러한 피해자 가족들을 진정으로 돕고 더 이상의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효율적으로 경찰력을 보강하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상담과 보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9) 사형수를 종신토록 감옥에 가두어두는 것보다 사형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은가?

- ☞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더불어 사형제도 또한 극히 비용이 많이 드는 형벌이다. 왜냐하면 재판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잡하고도 정밀한 항소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0) 엠네스티가 일반 범죄로 인한 사형수보다는 차라리 양심수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 ☞ 엠네스티 활동의 핵심은 엠네스티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규약은 엠네스티 조직의 최고결정기구인 국제총회에서 확정된다. 규약 제1조에 따르면 엠네스티는 첫째 양심수의 석방, 둘째 정치적 수인의 공정한 재판, 셋째 어떤 경우이건 고문과 사형의 폐지를 위해 활동한다. 이 모든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엠네스티는 최선을 다하며, 최근 1965년 국제총회에서 여러 차례 강조된 것처럼 사형폐지 운동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 ☞ 사형수들 중에는 반드시 일반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수인과 양심수들도 오랫동안 사형선고와 처형의 대상이 되어왔다.

11) 엠네스티가 생명권을 믿는다면 왜 낙태에는 반대하지 않는가?

☞ 엠네스티의 규약에 규정되어 있듯이 엠네스티의 활동은 수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다. 엠네스티는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심의 영역을 언제나 제한시켜왔다. 낙태, 안락사, 대중위생과 영양공급 등과 같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이 달리 많지만 그것들은 엠네스티의 활동 범위 밖의 일이다. 엠네스티 회원 개개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 있겠으나 조직으로서의 엠네스티는 이들 문제에 대해 특정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

12)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엠네스티가 사형의 시정을 찬성하는 특정종교를 모욕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가?

☞ 사형을 폐지하기 위해 각국 정부에 청원하는 경우 엠네스티는 특정 정치이념이나 종교를 공격하지 않으며 국제법에 부합되는 기본적 인권을 강조한다. 종교적 교리는 생명의 신성함을 존중하라고 가르친다. 주요 종교들은 복수가 아닌 용서와 자비를 명한다. 주요 종파의 단체들 중에는 사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단체도 많다.

II. 사형대기중인 한국의 사형수들 (94년 11월 현재)

한국정부가 정확한 자료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2명 내지 5명 정도가 누락되었으며,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C ; 범죄유형, A ; 최종항소)

일련번호	사건번호	이름	죄명	형확기일
1	87-2533	김만수	살인 및 기타	1988. 3. 8
2	90-271	김순자	살인 및 절도	1990. 4. 10
3	90-1691	박송규	살인 및 기타	1990. 6. 14
4	90 CA2511	임상출	살인 및 기타	1991. 2. 8
5	90 CA3090	임영사	살인	1991. 3. 8
6	90 CA3090	한춘도	살인	1991. 3. 8
7	91 CA35	김중석	방화 및 우발적 살인	1991. 3. 12
8	91 CA72	강순철	살인 및 절도	1991. 4. 14
9	91 CA933	이신호	살인 및 기타	1991. 6. 25
10	91 CA1152	최영복	살인 및 기타	1991. 7. 23
11	91 CA1169	변운연	살인 및 기타	1991. 7. 26
12	91 CA1014	신민철	존속살해	1991. 8. 13
13	91 CA1466	김동석	살인 및 기타	1991. 8. 27
14	91 CA1345	배진순	특수절도 및 강간	1991. 8. 27
15	91 CA1345	김철우	특수절도 및 강간	1991. 8. 27
16	91 CA2261	박현룡	절도 및 강간	1991. 12. 10
17	91 CA2425	지춘길	방화	1991. 12. 10
18	91 CA2514	송종호	살인 및 기타	1991. 12. 10
19	91 CA2764	임풍식	살인 및 기타	1991. 12. 24
20	91 CA3326	이형길	존속살해	1991. 12. 25
21	92 CA668	김준영	살인	1992. 5. 8
22	92 CA356	김영관	살인 및 기타	1992. 5. 26
23	92 CA873	김용세	살인 및 기타	1992. 6. 9
24	92 CA935	한재숙	살인	1992. 6. 26
25	92 CA1241	신종우	살인 및 기타	1992. 8. 18
26	92 CA1989	곽도화	살인	1992. 10. 13
27	92 CA1989	오승관	살인	1992. 10. 13
28	92 CA2148	장중건	살인 및 절도	1992. 10. 23
29	92 CA1613	이두규	강도 및 어린이 유괴	1992. 10. 27
30	92 CA2085	이상수	살인 및 강간	1992. 11. 10
31	92 CA2085	전장호	살인 및 강간	1992. 11. 10
32	92 CA2393	유영태	살인	1992. 11. 24
33	92 CA2115	정은희	살인 및 기타	1992. 11. 24
34	92 CA2472	태규식	살인	1992. 10. 20
35	92 CA917	김성도	살인 및 사체유기	1993. 2. 13
36	92 CA494	Amir Jail(파키스탄인)	살인 및 사체유기	1993. 5. 14
37	93 CA494	Mian Mohamaz Akad	살인 및 사체유기	1993. 5. 14
38	1045	서혁민	강도 및 어린이 유괴	1993. 6. 8
39	1549	김진택	존속살해	1993. 7. 27

III. 세계 사형제도 시행현황(1993년 12월 통계)

세계의 사형제도 시행현황에 대한 국제엠네스티의 93년 12월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53개 국가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고 16개 국가가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또한 21개 국가가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고 현재 존치국은 103개국이다. 그리하여 세계에서 90개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고 있으며 전체비율로 볼 때 47%의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였다. 그리스가 완전폐지국으로 분류되었고 루완다와 통가, 필리핀이 사형은 존치하나 시행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1.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나라 (53개국)

감비아	룩셈부르크	솔로몬 군도	우루과이	프랑스
기니바사우	리히텐 슈타인	스웨덴	체코 공화국	핀란드
나미비아	마살군도	슬로바키아 공화국	케이프 베르데	마케도니아
네덜란드	모나코	슬로바니아	캄보디아	하이티
노르웨이	모잠비크	스위스	코스타리카	헝가리
뉴질랜드	미크로네시아	아일랜드	콜롬비아	호주
니카라과아	바누아투	아이슬란드	크로아티아	혼두라스
덴마크	바티칸	안도라	키리바티	홍콩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주엘라	앙골라	투발루	그리스
독일연방공화국	사우투데프린시페	에쿠아도르	파나마	
루마니아	산마리노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2. 일반 범죄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16개국)

네팔	사이프러스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파라과이
멕시코	세이셸	엘살바도르	이탈리아	페루
몰타	스페인	영국	캐나다	피지
브라질				

3. 사형은 존치하나 최근 10년간 집행하지 안호은 국가 (21개국)

필리핀	바레인	부탄	스리랑카	토고
나우두	버뮤다	브루나이	지부티	파푸아뉴기니
니제르	벨기에	서사모아	코모로스	투완다
마다가스카르	볼리비아	세네갈	코트디브아르	통가
멜다이크				

한국정부는 사형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국제인권협약(47(B)협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42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3년에는 한국에서 1건의 집행도 없었으나 94년 10월 15명이 지존파 사건 등을 연유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사형집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희망합니다.

IV. 1993년의 세계 사형선고와 집행에 관한 통계

(AI index : ACT 51/01/94)

1993년에는 61개국에서 3,283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32개국에서 1,823명이 사형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계는 국제엠네스티에 알려진 것에 불과하며 실제적인 통계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엠네스티는 1993년 동안 중국에서 1,411명이 사형집행된 사실을 알고 있으나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알려진 세계의 모든 사형집행수치의 77%이다.

1993년 동안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알제리	자마이카	남아프리카
바하마	일본	수단
방글라데시	요르단	스와질랜드
바베이도스	케냐	타지크스탄
벨기에	쿠웨이트	타이완
벨리즈	레바논	탄자니아
베단	리베리아	태국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리투아니아	트리니다드-토바코
불가리아	말레이시아	터키
코트디브아르	말라위	우간다
쿠바	마우리티우스	우크라이나
이집트	솔도바	아랍에미리트연합
적도 기니	몽고	미국
에스토니아	모로코	베트남
가봉	니제리아	잠비아
가나	파키스탄	짐바브웨
기이아나	폴란드	
인디아	세인트 빈센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시에라 리온	
이스라엘	싱가폴	

1993년 동안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러시아	인도네시아
알마니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알제리	일본	싱가폴	
방글라데시	요르단	수단	
중국	카자크공화국	시리아	
이집트	쿠웨이트	타이완	
적도기니	라트비아	타크멘공화국	
그루지아공화국	리베리아	우간다	
가나	말레이시아	미국	
인도	모로코	예멘	

V. 국가의 살인행위 - 사형제도

생명권(The Rights of Life)은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제인권관련 규준들은 생명권을 확인하고 있으며 생명권의 보호를 위해 세계의 국가들이 취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B협약) 제6조 1항은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선택 의정서는 이러한 생명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세계의 국가들에게 국가의 의무로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사형제도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랜 전통에 속하는 관행중의 하나이다. 사형은 법률적 형벌의 범위를 벗어나 철학, 윤리학, 사회학, 인류학, 종교 등의 각 방면에서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 찬반논쟁의 대상이었다.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 구약성서, 고대로마의 십이표법 등으로부터 의사적 기원을 두고 있는 사형제도는, 근대형법학이 창립된 이후에도 루소의 사회계약설, 칸트와 헤겔의 응보형론, 밀의 공리주의 등 사형존치에 대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왔다.

사형존치론의 일반적 주장은 사형제도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억제 그리고 응보적 법감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와의 관계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여 사형이 생명권을 무시하는 형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사회적 법의식이 사형을 권하고 있다는 점을 사형존치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금세기에 들어오면서 사형존치론은 그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사형존치에 대한 기존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알려주는 연구결과들, 사형폐지를 규정하는 국제인권규준의 제정 그리고 사형폐지국에서의 경험은 많은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1764년 베카리아(Cesare Baccaria)가 "범죄와 형벌"을 통해 사형제도의 부적절성, 불필요성, 부당성을 지적하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사형폐지론은 시작되었으며, 그후 결판, 뎀드로스, 리스트, 등으로 이어지며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첼블리스(Chambliss)는 1951년부터 1966년 사이 미국에서 법적으로 집행된 수인의 숫자와 살인율을 비교하여 사형집행율이 현저히 감소해도 살인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 바버(Barber)와 윌슨(Wilson)이 켈스랜드주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형집행율과 살인율간의 관계는 정비례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셀린(Sellin) 교수는 1961년에서 1967년까지 미국에서 서로 비슷한 양상을 가진 수들의 살인을 비교과정에서 사형제도가 살인율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프랑스 판사인 안셀(M. Marc Ancel)씨는 1960년 유엔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24개국과 오스트리아의 1개주 그리고 미국의 6개주가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1988년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범죄학 연구소장으로 있는 로저 후드박사(Roger Hood)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9개국에서 사형이 폐지되었다고 한다.

1994년 1월 세계 90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 53개국,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 16개국, 사형은 존치하나 최근 10년간 집행하지 않은 국가 21개국 - 그 폐지 추세는 증가하고 있다. 94년 1월 103개국에서 사형이 존치하고 있으며 93년 동안 세계에서 61개국의 3,283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32개국에서 1,823명이 사형집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먼저 국가에게 사형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생명권은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로서 다른 어떠한 법익과의 비교형량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사형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라는 점이다.

둘째, 사형은 잔인하고 모욕적이며 비인간적인 형벌이라는 점이다. 형제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형집행방법은 교수형, 전기의자, 극독주사, 총살, 들로 쳐죽이기, 가스실 등이다. 이러한 집행방법은 그 자체로도 비인간적이며 잔인하다. 그리고 사형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강요하고 인간적 고통을 감수하게 한다.

셋째, 사형제도는 범죄억제효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형벌의 기능인 응보, 범죄억제 그리고 교도의 측면에서 한 수인을 사형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 미국, 노르웨이 등 다른 국가에서 조사된 연구내용들은 사형제도가 다른 형벌보다 효과적인 범죄억제기능을 가진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네째, 사형은 사법적 오류에 의해 무고한 희생자를 낳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어떠한 형태의 보상으로도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의 사형존치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사형제도가 종종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독재국가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빈번히 사형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의 과거정권하에서 김대중씨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던 사실은 좋은 예이다.

여섯째, 사형제도가 그 적용과정에 있어 형평성과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종류의 살인을 행한 어떤 수인에게는 무기형이 선고되고 어떤 수인은 사형집행에 이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사형제도는 빈곤계층, 소수인종, 소외집단에게 편중되어 적용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국가인 중국에서는 단지 소 일곱마리를 훔쳤다는 이유로 수인에게 사형이 선고되며 미국 등 6개국에서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을 사형집행하고 있다.

한국은 사형존치국이며 사형집행방법은 교수형이다. 한국은 오랜 사형제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의 법의식과 법감정은 사형제도의 존치를 인정하고 있다. 형법, 군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수가 100여개가 된다. 매년 9명에서 15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되며 지금도 약 50여명의 수인들이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1987년 이른바 가정파괴범에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보이며 단기간의 형으로서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며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소위 "생존할 가치가 없는 생명의 말살"이란 있을 수 없으며 "생존할 가치가 없는 생명"을 사형시킨 행위가 비록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였다는 도덕적인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다. 우리는 사형제도를 재고하여야 한다. 인간의 생명권은 고유하고도 존엄한 것이며 어떠한 이유나 경우에도 유보될 수 없다. 사형제도가 지니고 있는 범죄적 성격에 비추어 볼때 사형을 시행하는 국가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사형제도는 국가에 의해 자의적이고도 임의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또다른 살인행위일 뿐이다.

<참고자료>

지존과 관련자에 대한 공소장

※ 공소장 사본 중 발췌하였습니다. '중략' 부분은 사본의 복사 상태로 인해 식별 불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을 공란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94고합 1774

담임 : 단독 22부 (주심 '나')

<사건명>

- 가. 강도살인
- 나. 살인
-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 (특수강간)
-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 마. 범죄단체조직
- 바. 범죄단체가입
- 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
- 아. 사체 은닉
- 자. 사체 유기
- 차. 사체 손괴

검사 : 김홍일

<피고인>

- | | |
|--------------------------|-----------------|
| 1. 김기환 나,다,마,사,아 | 불구속 |
| 2. 강동은 가,나,다,라,마,사,아,자,차 | 1994. 9. 19. 구속 |
| 3. 김현양 가,나,다,라,마,바,사,자,차 | 1994. 9. 19. 구속 |
| 4. 강문섭 가,라,바,사,자,차 | 1994. 9. 19. 구속 |
| 5. 문상록 가,나,라,마,사,아,자,차 | 1994. 9. 19. 구속 |
| 6. 백병옥 가,나,다,라,바,사,아,자,차 | 1994. 9. 19. 구속 |
| 7. 이경숙 바,차 | 1994. 10. 6. 구속 |

<적용법조>

1. 형법 제2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형법 제297조 제114조 제1항, 제366조, 제333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38조,

- 2,3,6. 각 형법 제338조, 제2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제1항, 성폭력범죄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114조 제1항, 제330조, 제333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38조,
4. 형법 제338조,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97조, 제114조 제1항, 제12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38조,
5. 형법 제338조, 제250조,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114조 제1항, 제336조, 제333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7. 형법 제114조 제1항, 제336조, 제333조, 제161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38조.

<공소사실>

피고인 김기환은 1994. 6. 23. 강간치상죄로 구속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에 재판계속중인 자로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자, 같은 강동은은 1992. 10. 13. 서울지방법검찰청 의정부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 1회가 더 있는 자, 같은 김현양은 1993.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자, 같은 문상록은 1992.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범죄전력 2회가 더 있는자, 같은 백병옥은 1992. 11. 1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같은 이경숙은 1985. 10. 23. 대전지방법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같은 김기환, 같은 강동은, 같은 김현양, 같은 문상록, 같은 백병옥, 같은 강문섭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이경숙은 전남 영월읍 소재 '○○'이라는 주점 종업원인 바.

1. 피고인 김기환(일명;지존)은 1981.경 가정환경으로 중학교를 중퇴하고 1988.경까지 부산 등지에서 공장종업원 등으로 일하면서 자주 도박에 손을 대어 돈을 탕진하고, 1988. 6.경부터 1989. 12.경까지 방위벼으로 소집되어 그동안 모았던 돈의 대부분을 써버린 후, 다시 1990. 4.경부터 1991. 10.경까지 강원 삼척군 도계읍 소재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채탄부로, 1991. 11.경부터 1992. 7.경까지 광주 북구 각화동 소재 광주농산물공판장에서 하역부로 일했으나 쉽게 돈이 모아지지 않자 단순하고 무지하며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어 피고인을 맹종할 만한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의 불만을 사회일반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으로 대치하여 그들을 부추기면서 돈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납치하여 석방을 빌미로 금원을 빼앗고 완전범죄를 기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납치된 사람들을 살해, 유기하는 범죄단체를 만들기로 작정하고 그 시 경부터 1993. 2.경까지 약 8개월간 전국을 돌며 탄광, 공사현장 등지에서 알게 된 공소의 이여수, 조대화 등 근로자들을 상대로 동조자들을 규합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여 새로운 동조자들을 물색하고 있던 중,

가. 피고인 김기환, 같은 강동은, 같은 문상록은 공소의 망 송봉우와 공모하여, 1993. 4. 초순경 전남 함평군 내동면 소재 가회농장에서 벌어진 포카도박판에서, 피고인 김기환은 당시 수년간 공장, 공사판 등을 전전하며 같은 강동은, 같은 문상록, 위 송봉우 등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음을 기회로 이를 동안 함께 기거하면서 동인들에게 세상이 불공평하여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돈을 벌어 잘 살 수 없으니 힘을 합쳐 부자들을 납치하고 돈을 빼앗아 큰 돈을 모아 잘살아 보자는 등으로 부추기고 자신의 범행계획을 설명한 후 이에 가담하도록 유도

하고, 같은 강동은, 같은 문상록, 위 송봉우 등이 이에 동조하여, 같은해 5. 초순 경 전남 영광군 소재 불감산장에서 전국을 무대로 차량과 흥기를 이용하여 돈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납치한 후 그들의 석방을 미끼로 돈을 빼앗아 내는 범행을 계속하기로 하되, 피고인 김기환은 조직원을 통솔하고 자금을 관리하며 범행계획을 수립한 후 지령을 내리는 두목으로, 같은 강동은은 같은 김기환의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하다가 같은 김기환의 유고시에는 조직원을 통솔하고 자금을 관리하며, 같은 문상록, 위 송봉우는 같은 김기환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로 각 업무분담을 정하면서 아울러 조직원간의 위계질서를 세우고, '돈 많은 자들을 증오한다.', '10억원을 빼앗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범행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죽여 그 증거를 없앤다.', '조직을 배반하는 자는 지옥끝까지라도 따라가 죽인다.'는 등의 강령을 동 단체의 행동지침으로 정하고,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을 북돋우는 정신훈련과 극기훈련을 통해 끊임없는 범행욕구를 유발시키고 조직원끼리의 결속력을 다지며, 납치해 온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고문하고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소각시키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실 내에 사실감옥, 고문실, 사체소각장(피고인들은 위 시설을 '아방궁'이라고 지칭) 등을 갖춘 건물을 짓고, 기관총, 소음권총, 대검, 가스총 등으로 중무장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은 우선 아방궁이 완성되는 범행준비기간에는 피고인들이 공사판에서 벌어들이는 노임으로 충당하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돈으로 해결하기로 하여, 약취강도를 목적으로 하는 소위 '지존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나. 피고인 백병옥은

같은 해 5. 하순경 천안시 백석동 소재 천안종합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해물탕집에서, 1992. 10.경 의정부교도소 수감시 알게된 상 피고인 강동은으로부터 위 단체의 가입권유를 받고, 이에 동조하여, 그 시경 전주시 소재 공사현장 식당에서 위 단체조직원인 상피고인 김기환, 같은 강동은, 같은 문상록, 위 송봉우와 합류하여, 위 단체가 약취강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입하고,

다. 피고인 김현양은,

같은해 5. 하순경 위 굴갑산장에서 공소의 이경숙의 소개로 알게된 상피고인 김기환으로부터 위 단체의 가입권유를 받고, 이에 동조하여, 같은해 6.20.경 대전 유성구 엑스포 현대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단체의 조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을 하고 있던 위 단체조직원인 상피고인 김기환, 같은 강동은, 같은 문상록, 같은 백병옥, 위 송봉우와 합류하여, 위 단체가 약취강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입하고,

라. 피고인 강문섭은,

같은해 8. 초순경 전남 영광읍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상피고인 강동은으로부터 위 단체의 가입권유를 받고, 이에 동조하여, 수일후 위 엑스포 현대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일을 하고 있던 위 단체조직원인 상피고인 김기환, 같은 강동은, 같은 문상록, 같은 백병옥, 같은 김현양과 합류하여, 위 단체가 약취강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입하고,

마. 같은 이경숙은,

1994. 7.경부터 위 ○○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있는 위 단체조직원인 상피고

인 강동은에게 위 단체의 범죄행각을 듣고 있던 중, 같은해 9. 중순경 같은 강동은으로부터 위 단체의 가입권유를 받고, 위 단체에 가입할 것을 기약하고 같은달 17. 전남 영광군 불감면 양계면 위 단체 조직원들의 아지트로 가 조직원들인 상피고인 강동은, 같은 김현양, 같은 문상록, 같은 백병옥, 같은 강문섭과 ○○하여, 위 단체가 약취강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입하고,

2. 피고인 강동은, 같은 백병옥은 위 송봉우와 합동하여,

1993. 7. 초순 일자불상 23:00경 대전 유성구 송정동 소재 버스 정류장 앞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최미자(여, 20세)를 위 송봉우가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동녀를 동소 부근 다리 밑으로 끌고가지 이를 본 같은 강동은, 같은 백병옥이 위 송봉우와 합세하여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함께 협박하여 동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송봉우,, 피고인 강동은, 같은 백병옥의 순으로 동녀와 각 1회씩 간음하여 동녀를 각 강간하고,

3. 피고인 김기환, 같은 김현양은 합동하여

위 제2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구 방동 792 소재 피고인들의 자취방에서 같은 강동은, 위 송봉우로부터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한 후 동녀를 붙잡아 놓고 있다는 말을 듣고 동녀를 강간하기로 작정하고 같은 강동은, 위 송봉우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위 제3항 기재 장소로 가서 동녀를 같은구 송정동 소재 야산으로 끌고 가 같은 김기환, 같은 김현양의 순으로 전항의 강간행위로 항거불특정상태에 있는 동녀를 각 1회씩 간음하여 동녀를 각 강간하고,

4. 피고인 김기환, 같은 강동은, 같은 김현양, 같은 백병옥은 위 송봉우의 위와 같이 강간 당할 때 피고인 등의 얼굴을 본 피해자 최미자의 신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앨 뿐만 아니라 향후 사람을 죽일 경우에 대비하여 담력을 키우고, 함께 사람을 죽임으로써 조직원간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여 암매장하기로 공모하고, 공동하여,

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강동은, 같은 김현양, 같은 백병옥, 위 송봉우는 옆에서 망을 보고, 같은 김기환은 양손으로 수분간 위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그 시경 그 곳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케 하여 동녀를 살해하고,

나.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살해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간 삽으로 그 부근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위 피해자의 시체를 묻어 이를 은닉하고,

5. 피고인 김기환, 같은 강동은, 같은 김현양, 같은 문상록, 같은 백병옥은 같은해 7. 하순 일자불상경 위 범죄단체의 조직자들 중에서 금 300만원을 인출하여 도망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위조직을 이탈하였다 잡혀온 피해자 송봉우(남, 27세)를 '조직을 배반한 자는 죽인다'는 강령에 따라 동인을 (중략)

조직원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기로 공모하고, 공동하여,

가. 같은해 8. 일자불상 18:00 경 전남 영광군 불감면 ○○산 계곡에서 복날이니 개를 같이 먹자는 구실로 위 송봉우를 그곳까지 유인하여 위 송봉우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함께 둘러싸고 동인의 배반행위를 추궁하다가, 같은 김기환이 가지고 간 도마로 위 송봉우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같은 김현양도 들고 위 송봉우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같은 문상록은 가지고 간 철사줄로 위 송봉우의 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미리 그곳에 가져다 놓았던 곡괭이로 위 송봉우의 다리부분을 1회 찌고, 같은 백병옥은 다시 위 곡괭이로 위 송봉우의 머리부분 등을 수회 내리찍어, 그 시경 그곳에서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케하여 동인을 살해하고,

나.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살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두었던 삽으로 그 부근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위 송봉우의 사체를 묻어 이를 은닉하고,

6. 피고인 강동은, 같은 김현양, 같은 문상록, 같은 백병옥, 같은 강문섭은 1994. 5. 중순경부터 같은해 9. 하순경까지 전남 영광군 불갑면 금계리 81대지 약 170평 위에 위 범죄단체의 아지트를 건축하면서 그 지하실에 사설감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중략) 로 위장한 대점, 가스총 등 흉기를 구입하게 되자, 위 아지트 건축과 총기구입과정에서 진 빚을 갚고 위 범죄단체 본래의 목적대로 본격적인 범행에 나서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같은 강동은, 같은 백병옥이 같은해 8.29. 광주교도소에 강간치상죄로 구속 수감중이던 두목 김기환에게 그 뜻을 전달하여 동인으로부터 승락을 받게되자,

가. 공동하여,

같은해 9.8. 03:00경 경기도 남양주군 조안면 송촌리 도로상에서, 범행 대상인 그랜저 승용차 등 고급 승용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전남 7더 1771호 포터화물차를 정차시킨 채 잠복하고 있던 같은 강문섭이 때마침 그곳을 피해자 이종원(남, 34세), 같은 이순희(여, 26세)가 경기 1 초 1019호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부터 약 2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르망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던 같은 강동은에게 그랜저 승용차가 지나간다고 알려주어, 같은 강동은이 위 르망 승용차로 위 이종원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정차시키고, 미리 길 양쪽에 숨어있던 같은 김현양, 같은 문상록, 같은 백병옥이 뛰어나와, 같은 백병옥은 버팀목을 그랜저 승용차 앞바퀴 부분에 끼워 승용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김현양은 소지하고 있던 깨스총을 위 이종원에게 쏘고, 같은 문상록은 소지하고 있던 대검으로 위 이순희를 위협하여 위 이종원, 이순희를 차 밖으로 끌어낸 후 재갈을 물리고,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가둔채 끌고가, 같은 날 09:00 경에 아지트에 도착하여 위 이종원, 이순희를 지하실 감방에 가두고 석방의 대가로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위 이종원 등이 돈이 없어 재물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평소 계획대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이종원을 살해하기로 모의하고, 같은날 9. 22:00경 아지트 지하 감방에서 같은 김현양, 같은 문상록은 이미 피고인들이 먹인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위 이종원의 양 팔을, 같은 백병옥, 같은 강문섭은 위 이종원의 다리를 잡고, 같은 김현양은 위 이순희로 하여금 4점으로 점친 비닐봉지를 위 이종원의 머리에 씌우고 손으로 코와 입부분을 눌러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동인의 숨이 끊어지지 않자, 같은 백병옥이 위 비닐봉지를 걷어내고 장갑 낀 손으로 수분간 위 이종원이 숨을 쉬지 못하도록 동인의 코와 입부분을 막아 동인으로 하여금 그 시경 그곳에서 비구폐쇄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여 동인을 살해하고,

나. 위와 같이 피해자 이종원을 살해한 후 위 이종원의 사체를 동인이 음주운전으로

추락사한 사체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 범행을 은폐하기로 공모하고,

같은날 10. 03:30경 전북 장수군 민암면 교동리 마을 계곡 위 도로상에서, 피고인 강동은, 같은 김현양, 같은 문상록, 같은 백병옥이 그곳까지 운반해온 위 이종원의 사체를 동인의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 옮겨 앉힌 후 같은 김현양은 망을 보고, 같은 강동은, 같은 문상록, 같은 백병옥은 계곡을 향하여 위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밀리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위 이종원의 사체를 유기하고,

다. 합동하여

같은 달 8. 10:00경 위 아지트 지하 감방에서, 같은 문상록이 그곳에 감금되어 항거 불능상태에 빠진 위 이순희의 옷을 벗기고 동녀와 1회 간음하고, 이어서 같은 김현양, 같은 백병옥, 같은 강동은, 같은 강문섭이 순차적으로 동녀와 각 1회씩 간음하여 동녀를 각 강간하고,

라. 공소의 이순희와 공동하여,

같은달 12. 17:00경 성남시 남서울 묘지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그곳에 주차된 경남 1조 2744호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자 그 승용차의 주인을 납치하기로 하고, 피고인 김현양, 같은 백병옥, 위 이순희가 그 부근에서 벌초를 하고 있던 피해자 소윤오(남, 43세), 같은 박미자(여, 37세) 부부에게 다가가, 피고인 김현양이 위 소윤오에게 말을 걸어 동인이 위 차 소유자인 것을 확인한 후 소지하고 있던 깨스총을 위 소윤오를 향해 쏘았으나 동인과 위 박미자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김현양 같은 백병옥 등이 함께 쫓아가서 붙잡아 노끈으로 위 소윤오, 박미자 부부의 손발을 결박하고 입속에 손수건을 넣어 재갈을 물리고, 동인들을 포터화물차 적재함에 가둔채, 같은달 13. 03:00경 위 아지트까지 끌고가 그곳 지하실 감방속에 가두고 동인들에게 돈을 내놓으면 석방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위 소윤오로 하여금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울산시 소재 삼정기계공업사에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8,0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는 전화를 하도록 하여, 같은달 14. 01:20경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광천터미널 부근 육교밑 공중전화 부스 옆에서 위 소윤오로 하여금 위 회사 영업부장인 공소의 심성수로부터 금 8,000만원을 건네받도록 하고, 그 시경 항거불능상태에 빠져있던 위 소윤오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사람을 약취하여 석방의 대상으로 금원을 취득하고, 위 단체의 범행계획대로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서로 모의하고, 같은달 15. 21:00경 위 아지트 지하감방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이고, 같은날 22:00경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쓰러지자 피고인 김현양이 위 이순희로 하여금 공기총으로 위 소윤오의 머리를 2회 쏘도록 하고, 이어서 같은 강문섭은 미리 준비한 대검으로 위 박미자의 목부분 등을 수회 찢러 그 시경 그곳에서 위 소윤오로 하여금 뇌손상으로, 위 박미자로 하여금 실혈 등으로 각 사망케 하여 동인들을 각 살해하고,

7. 피고인 강동은, 같은 김현양, 같은 문상록, 같은 백병옥, 같은 강문섭, 같은 이경숙은 위 제 6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 소윤오, 박미자를 살해한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동인들의 사체를 불에 태워 없애기로 순차 공모하고, 공동하여,

같은달 15. 23:00경 위 아지트 지하실 감방에서, 피고인 강문섭, 같은 김현양이 도끼와 칼로 위 피해자들의 사체를 절단한 후, 같은 백병옥, 같은 문상록과 함께 사체를 소각하

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날 이미 만들어 놓았던 사체소각로 속에 위 피해자들의 절단된 사체토막들을 집어넣고 경유버너를 이용하여 소각하려 하였으나 통풍이 되지 않아 불이 자주 꺼지자 다음날 01:00경 이를 중단한 후, 같은달 17. 13:00경부터 연통을 설치하는 등 통풍시설을 갖추고 장작으로 다시 위 사체소각작업을 벌이고 있던 중, 같은날 21:00경 이를 알게된 같은 이경숙과 같은 강동은, 같은 문상록, 같은 김현양, 같은 백병욱, 같은 강문섭 등이 모여 시체소각을 같은 문상록, 같은 강문서이 그 시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위 사체들을 소각하여 이를 각 하고,

8. 피고인 김기환, 같은 강동은, 같은 김현양, 같은 문상록, 같은 백병욱, 같은 강문섭은 공모하여, 범죄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당국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1994. 5.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해 9.19.까지 사이에 위 아지트에서 같은 김기환이 1991. 10. 경부터 1993. 1. 초순 경까지 강원 삼척군 도계읍 도계광업소 등지에서 가지고 나온 폭약인 다이아나이트 뇌관 20개와 떡밥 14개를 공동으로 보관하여 화약류를 소지하고,

나. 같은해 6.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해 9. 19. 가지 사이에 위 아지트에서 같은 김기환이 그시경 서울 청계천 소재 대림공업사 업주 김학기에게 80만원을 주고 주문하여 제작받은 등산용지팡이로 위장된 칼날길이 16센치미터인 도검 8개를 공동으로 보관하여 이를 공동으로 소지하고,

다. 같은해 8.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해 9.19까지 사이에 위 아지트에서, 같은 김현양 등이 그시경 공소의 이주현으로부터 240만원을 주고 구입한 가스총 1정, 전자충격기 1개 등을 공동으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한 것이다.

■ 도전 인터뷰/ 지존파 검거 서초경찰서 고병천 강력4반장

“모방범죄 걱정된다”

대담/ 오귀환 차장

그들은 지난 추석 때부터 1주일 동안 겨우 10여시간 눈을 붙였을 뿐이다.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지존파' 일당을 검거하고 새로운 범죄들을 하나하나 밝혀냈다.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4반. 경찰 근무 18년째인 반장 고병천(45) 경위는 무거운 눈두덩을 비비면서 말했다. "잘 믿어지지 않았지만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들을 잡아서 한 천명은 실려낸 거 아닌가 라구요.' 그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반성과 정화를 기대하는 말을 덧붙인다.

지존파 범인들을 검거하고 함께 지낸 지 이제 (9월 25일 현재) 1주일 됐는데 범인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가. 처음 붙잡혔을 때는 태연하고 누우치지 않고...그런 모습이 일반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변화된 것은 없는가.

4일째까지는 태연하고 자기 반성이 없었다. 그런데 5일째 되던 날부터 조금씩 초조해하는 모습이 보였고 어떤 때는 죽음을 느끼는 것 같다. 얼굴을 보면 느낄 수 있다. 김현양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삶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김현양은 포기한 것 같고.

처음에 강동은의 '아티족 발언'과 김현양의 이뻐한 웃음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다고 보나.

이들이 정신연령이 좀 낮다. 머리는 좋은 편이다. 스물두세살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2, 3학년 정신수준 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남 앞에서 우쭐해하고 영웅연하는 기질이 보인다. 김현양의 웃음은 비웃는다기 보다는 자조했다고 봐야 한다.

그들이 잡힌 뒤 자기들끼리 잡힌 것 가지고 다투거나 원망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김현양이 탈출한 이아무개씨를 병원에 데리고 간데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놓쳤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속으로는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단결이 돼 있다. 내가 김현양에게 "네 동료들이 너 때문에 잡힌 셈인데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냐"고 물으니 "글쎄, 속으로는 좋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 없어요"라고 대답했다.

이들이 정신장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정신장애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살인을 시험삼아 저지른다든지, 인육을 담력을 키운다면서 먹는 것은 정신장애라고 볼 수 있다. 김기환이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다. 극단

적인 것으로 몰아갔다. 오랜 수사관 생활(18년)과 경험에서 이번 사건을 한마디로 분류·정의한다면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한다면 '자기반항적 범죄'라고 할 수 있겠다. 자기가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를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 반항하는 그런 범죄다. 자기 성취를 못 이루는 상태에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증오하고 범행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범죄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과거의 범죄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

“이번 수사 때문에 농촌에 가 보니까 도시와 격차가 너무 심했다. 그 시골을 떠난 청소년들이 서울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충격을 받을지는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좀더 정화돼야 한다. 가진 사람들이 많이 베푸는 사회가 돼야 한다.”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르면 먼저 현장을 떠나는 게 관례다. 그래서 증거도 남는다. 그러나 이들은 범행대상을 반드시 죽이고 시체소각장까지 갖추는 등 증거의 완전인멸을 노렸다. 또 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 친구를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친구도 배신하면 죽어야 하기에 고르지 않는다. 의사는 같으면서도 친구가 아닌 자들을 끌어들이 범죄단체를 만들었다. 지난번 배신한 자기들 동료들 죽일 때 이들은 영화 <벤허>에서 남주인공 벤허를 배반한 로마인 친구 '헛살라'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죽였다.

보통 범죄가 짧은 시간 내에 계획하거나,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이들은 오랜 기간 계획을 세우고 무작위로 범행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언제 러브호텔을 치키고 있다가 아베크족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습격한다든지 하는 식이다. 이들은 한명이 3백명씩 죽이겠다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범죄와는 도대체 양상부터 다른 것이다.

이들이 아티족, 러브호텔, 백화점 고객사용자 등으로 표현되는 부유층에 대한 증오를 공언하는데 정말 그렇게 증오했나.

'가진 자에 대한 증오'라는 말이 그들이 만든 단어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 상상도 하지 못했다. 조서를 작성할 때 '왜 그랬나'라고 묻자 첫 마디

단어가 바로 "가진 자에 대한 증오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다. 그들의 이른바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는 어느 정도였나.

실제로 그들이 준비를 하면서 살상무기를 많이 구입하려 했다. 권총, 마취총... 그리고 지금 준비해놓은 등산용 스틱 속의 칼은 엄청난 것이다. 실제 상황에서 그것을 빼가지고 앞에서 있다면 웬만한 사람은 그냥 주저앉을 정도로 끔찍하다. 그런 무기에도 차에는 항상 철사줄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여기다 그랜저 이상을 타고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소윤오씨 같은, 자수성가하고 학교도 중퇴한 사람까지 그런 것은.

얼굴을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들은 살려두지 않았다. 누구도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들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김현양 같은 경우는 평소 "은행을 털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그러다 김기환을 아는 사람이 연결시켜준다. 그렇다면 김현양의 범죄목적은 실재는 돈이었다. 부를 축적하고 싶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들이 10억을 모은다고 한 것도 부의 축적 욕망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돈을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김기환 때문이다. 그는 '지존'이라는 별명을 가진 것처럼 그들의 우상이었다. 그런 점에서 김은 자기의 다른 목적을 위해 다른 자들을 이용한 것일 수도 있다. 그 역시 부의 축적이 1차 목표였고, 이를 위해 가진 자는 아무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입시킨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자기들을 독하게 만들기 위해 별별 짓을 다 한 것이다. 경쟁하듯 서로 잔인한 짓을 했다. 아주 잔인무도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범죄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단계까지 간 것 같다. 범행을 하면서 스스로 흥분해갔다.

범인들은 잡힌 뒤 계속 죽음에 대해 초연한 것처럼 말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자기들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 자기들도 엄청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 죽음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그 가운데 한명이 내게 이런 제안을 했다. "제가 여기서 아주 끝까지 살게 된다면, 차라리 죽으면 관제 없지만, 오래 산다면 어디 차출이 돼가지고 파견된다는 이야기를 봤는데 반장님이 힘 좀 써서 추천해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았다. "그게 너 혼자 뜻이냐, 아니면 전부의 뜻이냐" 그랬더니 "아마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했듯이 이들의 정신연령이 낮기 때문에 자존심을 고집하는 측면도 있다.

그의 이야기는 무슨 군부대 같은 데서 사형수를 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수사과정에서 다른 흥미있는 이야기는 없었다. 7천원짜리 음식을 처음 먹어봤다는 등.

이들은 범죄자금을 마련하고 범죄연습을 하기 위해 공사장일을 하면서 합숙생활을 했다. 그러면서 돈을 별로 쓰지 않았다. 그동안 전부 한번 6천원



짜리 부페에 가서 먹은 게 최초로 비싼 음식이었다고 한다. 모든 돈을 범죄의 완성을 위해 투입했다. 그 막노동을 하면서도 보름 동안 지옥훈련도 했다. 집요했다. 만일 우리가 1년 정도 늦게 그들을 잡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들의 지능지수나 지적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머리는 좋은 편이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질문할 것을 미리 대비를 한다. 순간순간 앞서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탈출한 이아무개씨의 말을 들어도 범행논의를 아주 치밀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 수준은 낮다. 생각하는 게 매우 동물적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 주변 사람이 조금 주의하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꽤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지트 공사에 대해 가족과 마을사람들이 눈치챌 수도 있었고, 경찰도 초동수사에서 미진했던 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장수경찰서 사건같은 경우에 거의 완벽하게 교통사고로 위장했지만 조금 더 치밀하게 했으면 허점이 발견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아지트 문제인데 부근 사람들이 실제로 의심했다. 그런데 (경찰은) 정보수집이 안 됐다. 독립기구에 대한 주의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이런 모방범죄가 안 나오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우리 같은 조직이 또 있는데..." 하면서 슬쩍 흘리는 이야기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지존파처럼 뚜렷한 목적을 지닌 흉포한 범죄집단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다.

실제로 가능하다고도 생각된다. 일부 범죄자들은 이들의 흉악한 수법을 배워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것이다. 모방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수법의 모방 뿐만 아니라 이른바 가진 자들의 증오를 내세우는 범죄단체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고 부에 대한 불만, 가진 자에 대한 불만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좀더 반성할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 수사 때문에 농촌에 가 보니까 도시와 격차가 너무 심했다. 그 시골을 떠난 청소년들이 서울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충격을 받을지는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좀더 정화돼야 한다.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배푸는 사회가 돼야 한다. ㄷ

살인 지옥 200시간

지존파 신고한 이선영씨(가명) 독점 인터뷰

9월22일 성남의 한 호텔에서 <시사저널> 취재반은 이른바 지존파의 '살인 공장'에서, 막 빠져나온 여자를 기다렸다. 어렵게 인터뷰 약속을 받아냈지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반신반의했다. 약속 시간이 조금 넘어 검정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이선영씨(가명)가 들어왔다. 그는 목격자이며 피해자이며 증인이며, 또 용의자이며 신고자였다. 그가 나타난 것은 자의반 타의반이었다. 타의란 물론 <시사저널>의 부탁이다. 그가 말한 대로 실어줄 것을 약속하고,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는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그는 좀처럼 말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막상 말문이 트이자 그는 놀라우리만큼 정확한 기억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느 사람 같으면 숨겨도 될 것까지, 때로는 걱정적으로, 때로는 가쁜 숨을 죽이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2백시간 동안 겪은 악몽을 5시간 동안 (원고지 5백장 분량) 털어놓았다. 죽음의 늪에서 막 빠

져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들이었다. 이 내용들은 그뒤로 계속된 현장검증과 수사발표에서 다 사실로 밝혀지고 연일 언론 보도의 첫머리를 장식했다. 그것은 또 주먹구구식 경찰수사를 반증하는 것이었다.

그는 살인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참에 백화점 고객 1천2백여 명의 '예약자'와 리브 호텔 투숙객과 오렌지족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구한 셈이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그들의 1차 목표는 경찰'이었다. 다행히 경찰은 한명도 희생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한번도 검문검색을 안한 탓이기도 했다. 신고 이후 그가 겪은 불안감은 "차라리 육체적으로는 '그 집'이 더 편했다"라는 그의 말 속에서 드러난다. 그는 언론이 지존파 일당에게 돌아붙인 증오의 연사를 구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제 사람을 안민했다고 했다. 그것은 이 사회를 안민했다는 말로 들렸다. 그의 고백을 육성대로 증계한다. <편집자>

정리·김 당 기자

나 (이선영·27·가명)는 그날 몸이 아파 혼자서 자취방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같은 업소(서울 역삼동 포카페)에서 밴드 마스터로 일하는 이종원씨(36)가 전화를 했다.

"몸은 좀 어떠냐. 일 끝나고 새벽 3시에 양

평 양수리에서 효진이(포카페 동료)와 만나기로 했는데 강 바람 좀 쐬고 오자." 나는 내키지 않았으나 따라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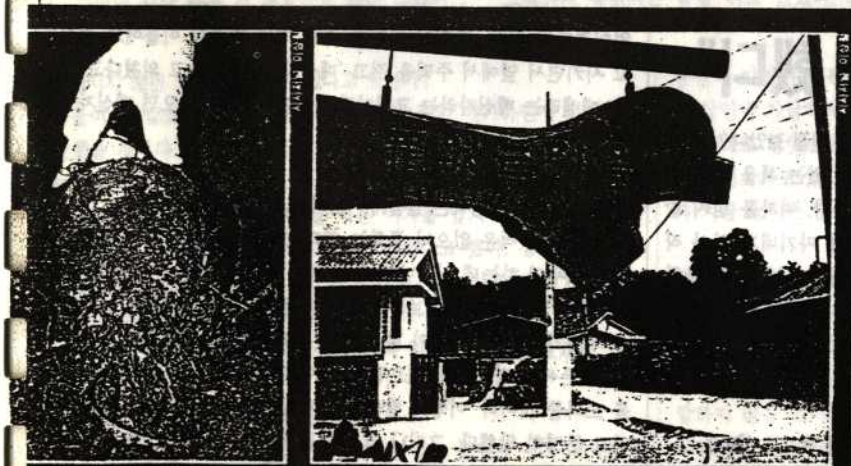
약속 장소에서 시간을 보니 새벽 3시23분이었다. 효진이가 오지 않은 것 같아 우리는 강 바람이나 쐬고 가려고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흰색 트렁크 승용차가 앞을 가로막았다. 불과 몇 미터 간격이었고 뒤에는

어느새 타이탄 트럭이 막고 있어 차를 댈 수도, 돌릴 수도 없었다. 우리가 당황해 있는데 청년 2명이 열린 창문 안으로 가스총을 쏘았다. 그들 중 한 명은 종원씨 얼굴을 때렸고 한 명은 내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고 눈을 가렸다.

"우리는 언제 죽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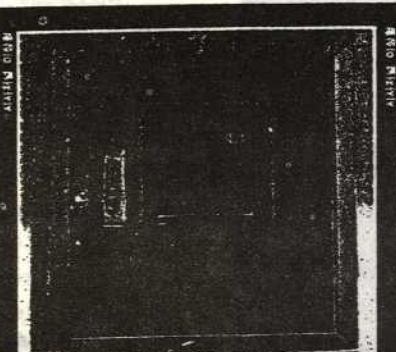
잠시후 손발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내가 먼저 타이탄으로 옮겨졌다. 이어 쾅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만져보니 종원씨였다. 나중에 알았지만 청색 덮개가 씌워진 현대 포터였는데, 그들은 우리를 짐칸의 맨 안쪽에 밀어넣고 종이 박스로 위장했다. 그 안에서 2명이 감시했다. 맨 앞에서 그랜저(종원씨 차)가 선도했는데 우리를 감시하는 청년과 무전 교신하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앞에 검문소가 있다. 조심해라. 개는 잘 처리했나?" "형, 걱정없어." "기절시켜 놔." 이런 소리가 들리곤 했다. 가는 도중 나는 종원씨 허벅지가 칼에 찔린 것을 알았다. 또 세번 쯤 지지직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자쇼크봉으로 종원씨를 기절시키는 소리였다. 얼마를 달렸는지 모르겠다. 고속도로와 국도를 거쳐 비포장도로로 나온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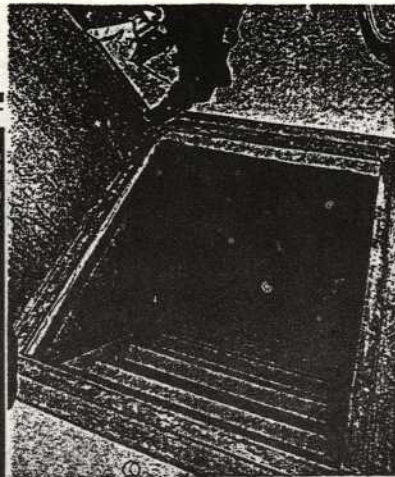


현장에서 수습한 유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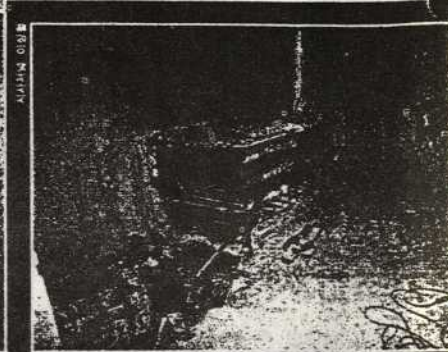
'범죄가 없다'는 이 마을에 '살인 공장'이 차려졌다.



외부인 접근을 막기 위한 대문밖 계랑기.



지하 살인공장으로 통하는 죽음의 계단.



소운오씨 부부를 토막낸 뒤 불태운 소각장치.

같았다. 밖을 볼 수 없어 도착 지점이나 시각은 알 수 없었다. 눈이 가려진 채로 우리는 지하실로 업혀 갔다. 눈을 뜨니 철창이 보였다. 한쪽 구석에 총·칼·전자봉 같은 텔레비전에서나 본 무기들이 보였다.

범인 중 1명이 종원씨를 먼저 심문했다. '뭐하는 사람이나, 여자랑 언제부터 사귀었느냐, 왜 거기를 갔느냐, 돈은 얼마나 있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방에서 따로 심문 받았다. 한 명은 칼을 들고, 다른 한 명은 노트에 적으면서 인적사항, 남자와의 관계를 꼬치꼬치 물었다. 우린 숨길 것도 가진 것도 없었다. 한 시간도 채 안돼 그들은 우리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죽쳐 봐야 돈 나올 것 같지 않다. 어차피 재수 없어 걸린 거고 우리도 재수 없게 애들을 잡았으니 빨리 처리하자.' 이런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야, 포기하자' 하더니 한 명만 남고 모두 1층으로 올라

가는 것 같았다.

지하실에서는 전혀 밖이 보이지 않았으나 저녁때쯤인 것 같았다. 한 명이 라면을 끓여와 먹으라고 했다. 안 먹고 있으니 가지 않고 지켜보았다. 나는 직감적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했다. 단순 강도면 그 자리에서 지갑만 빼앗지 여기까지 끌고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종원씨한테도 부탁했다. 내가 무슨 것을 당하더라도 제발 가만히 있어 달라, 그러다고 달라질 것도 없다고.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그는 문상록(23)이라는 남자였다.

"언제 죽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의논중입니다."

"부탁인데, 같이 죽여 주세요."

"아마,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나한테 용건 있어요?"

"한번 할려고 왔다."

"그러면 하고 가세요."

그 남자가 나가고 김현양(22)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두 분이 안됐다.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했다. 그냥 하기가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들 다섯은 나한테 얘기를 많이 붙였다. 나는 내가 살려고 해도 살려줄 것 같지 않은데 뭐하러 그러느냐고 했고, 그들은 여기 잡혀온 사람치고 죽을 때 하는 말이 다들 살려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아가씨는 참 이상한 여자라고 했다. 그들은 또 돈 있는 사모님 고통 주면서 죽이게 자기들 낙인데, 두 사람은 운이 나쁘다고 했다. 거기서 그렇게 첫날 밤을 지냈다.

새벽인지 아침인지, 현양이 다시 내려왔다. 나는 다시 "언제 죽어요?" 하고 물었다. 그는 "내일쯤 될 것 같다. 선영씨는 좀 있어야 될 겁니다" 했다. 그는 또 "칼자루는 내게 있으니 선영씨는 죽어도 내가 죽일 겁니다" 이랬다. 그는 사람 죽인 얘기를 다 해주었다. 회도

없어졌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는 지존이 이들에게 죽이려고 시키면서 옆에서 주먹을 쥐고 '메셀라, 메셀라'하고 외쳤다고 했다. 메셀라는 배신자라는 고대어라고 했다. 지존이 나오면 배신자부터 처단한다는 말도 했다.

강동은의 애인 이경숙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나?

거기서 만난 적은 없으나 통화는 했다. 그전에 강동은이 어떤 여자를 멤버로 두려 하는데 어쩌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강동은이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주며 받아보라고 해 받아보니 이경숙이라는 여자였다. 그 여자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충고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동은씨 도와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도와달라, 신이 있으면 동은씨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 여자에게 납치되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니 그 여자는 공범인 셈이고 그들의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본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기에 알지만 신고는 못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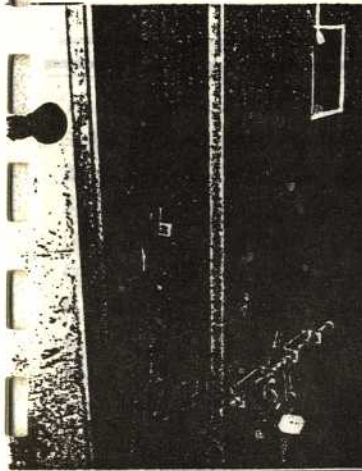
"사람을 안 믿기로 했다"

지존파라는 조직의 실체가 있는가? 행동강령을 직접 보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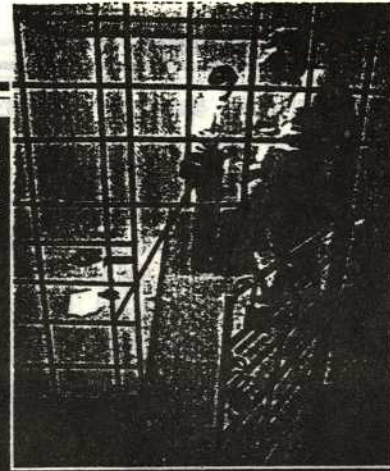
책에 쓴 것을 보았다. 제명 같은 것이 적혀 있는 책을 내게 보여줘 몇 개를 보았는데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한다, 여자를 믿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다. 책 뒤에는 약보도 있었는데 자기네가 작사 작곡한 군가라고 했다. 공포감에 시달릴 때 그들은 이 '군가'를 불렀다. 잠깐 들어 보니, 우리는 죽으러 간다, 이런 내용이었다. '지존현장' 이런 식으로 쓴 것을 보여주었는데, 나중에 지존이 (야망)이라는 책을 쓸 거라고 했다.

지존(두목 김기환·강간처상 혐의로 수감중)에 대해 뭐라고 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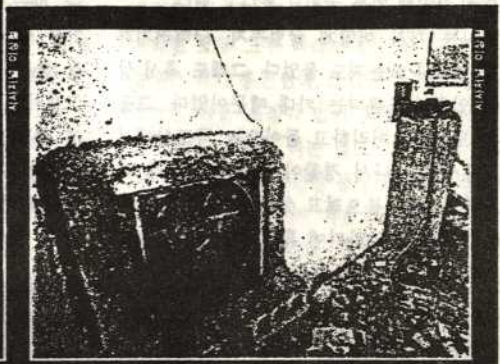
그 사람을 형이라고 안 부르고 지존이라고 불렀다. 들기로는 처음 지존이 5명으로 조직을 결성했는데 4명이 여자 때문에 배신해 조직이



김방에 설치된 철문



납치된 사람들을 심문한 사제 취조실



희생자들을 언기로 사라지게 한 환풍기

뜨고, 토막내서 죽이기도 했다고 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지만 나는 그냥 웃었다. 그는 어떤 여자는 고통스럽게, 어떤 여자는 인간적으로 죽었다면서, 자기는 회를 떠서 먹기도 했다고 했다. 나는 고통 없이 죽여 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그러라고 약속했다.

"경찰 죽이는 것이 소원이다"

사흘째 되는 날, 그날 따라 그들은 분주해 보였다. '몇시부터 시작할까, 여자는 어떡하지'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여자랑 같이 죽이면 증거가 많이 남는다. 남자는 음주 사고로 처리하고, 여자는 실종 처리하면 된다. 여자는 나중에 토막내 소각 실험하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모아진 듯했다.

그들은 나한테 '남자가 네 손에 죽고 싶는데 어떡할래' 물었다. 난 못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사람 죽는 것 못보았을 테니 나와서

보라'고 했다. "12시부터 시작하자"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은 나를 나오게 했다. 내가 보니 점점 비닐봉지를 네 겹으로 싸서는 내게 들고 있으라고 주었다. 강제로 소주를 먹인 종원씨 눈은 초점이 없어 보였다. 그들은 내게 비닐을 씌우게 했다. 내가 못하겠다고 울면서 비닐을 떨어뜨리자 누군가 "너 죽고 싶어, 울면 너도 회 떠버려" 했다. 그러자 현양이 "이러면 죽습니다. 흉내만 내십시오" 했다. 나는 울면서 비닐봉지가 씌워진 종원씨의 입에 손을 댔다. 순간 내 손에 그의 숨결이 느껴졌다. 화들짝 놀라서 손을 떼자 누군가 "저 년도 같이 회쳐 버려" 했다. 현양이 "잘하고 있잖아" 하면서 다시 내 손을 종원씨 입에다 갖다 댔다. 내가 겁에 질려 고개를 돌린 채 입에 손만 대고 있자 현양은 내 손을 치우며 자기가 하겠다고 했다.

그때까지 종원씨는 숨을 쉬고 있었다. 그

러나 그들은 완벽했다. 세번이고 네번이고 살았는지 확인을 했다. 나는 속으로 제발 살아있기만을 기도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종원씨는 그때 죽은 척하고 있었다. 이들의 리더인 강동은(21)은 그날 종원씨를 죽이기 전에 음주 운전 사고로 위장할 만한 장소를 사전 답사해 두었다. 그러나 의견이 엇갈렸다. 자기들끼리 "양수리로 가자, 성남에서 술 먹고 전라도까지 와서 죽은 것은 이상하지 않냐." "뭘 귀찮게 거기까지 가냐. 며칠 찾다가 말텐데, 매스컴에서 때려죽 사람도 아닌데" 하기도 했다. 그런데 종원씨를 침방에 담아 포터에 싣고 가려면 얼어붙은 과정에서 꿈틀거렸던 모양이다. 그들은 장수군 수분제(나한테는 무주 구천동 가는 길이라고 했다) 근처에서 종원씨를 유기하고 돌아와서 "거봐 임마, 확인 안했으면 큰일날 뻔했잖아" 했다. 현양에게 물어보니 살아 있길래 전자총격봉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범죄가 있다고 보는가?

그들이 한 말로 보면 그렇다. 나한테 사람 죽인 얘기하면서 거짓말은 안했을 것이다. 현양이만 해도 여자를 두번 죽였는데 처음 죽인 여자는 서른한 살이었다고 했다. 내 판단으로는 그때 처음 자본을 마련했던 것 같다. 두번째는 스톱살 먹은 여자를 납치해 죽였다고 했다. 자기가 맨 마지막으로 강간하고 목을 졸랐다고 했다. 강동은은 때는 녹즙기와 커티기로 갈아서 국물은 눈에다 붓고 살은 개를 주었더니 엄청 잘먹는단면서, 전에 누구도 그랬고 저 여자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다른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었다.

말쭙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

내가 살아서 신고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종원이 아저씨 때문이다. 나는 종원이 아저씨의 마지막 눈빛을 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공범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종원이 아저씨를 질식사시킬 때도, 소운오씨를 공기총으로 쏘 때도 나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는 당시 상황을 보거나 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했는데 언론 보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비치기도 했다. 경찰에서 나는 사실대로 진술했다. 그때 말한 것과 지금 말하는 것은 똑같다.

충격이 클 텐데 앞으로의 계획은?

나는 아직도 내가 겪은 일이 믿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진술을 토 붓처럼 되풀이하고 있지만 나 자신도 믿어지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건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번에 세상 느낀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간사하다는 점이다. 경찰도, 기자 아저씨들도 그렇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은 혼자 있으면 너무나 무섭다. 안정이 되면 시골에서 살 생각이다.

김 담 기자

으로 확인해 차를 끌고 왔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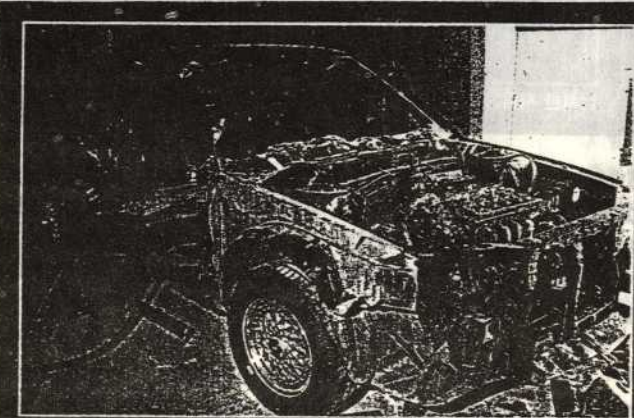
나는 차가 어떻게 굴렀는지, 낭떠러지가 몇 미터나 되는지도 몰랐다. 그래도 혹시 살아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들은 또 위장 처리하고 돌아오는 국도상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이 차를 세우길래 여차하면 한판 붙으려고 했는데, 경광봉을 쥘 줄고 흔들어 달라기에 흔들었더니 나중에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더라는 얘기도 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지 모른다. 어느날 (9월13일) 자기들끼리 서울을 가야 하는데 내 문제가 남아 있었다(그날 범행을 앞두고 날 어떻게 할지 의견이 엇갈렸던 모양이다). 그때까지 그들은 지하실에 있는 나를 세번쯤 찾았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저 애 또라이 같다. 맛이 간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태연할 수 있나, 어떻게 하지' 하는 말도 들었다. 상륙이라는 애는 처음부터 날 싫어했다. 상륙은 "어차피 뒤 봐야 시한폭탄이다. 죽이고 가자"라고 했고, 현양은 "우리는 어차피 같이 죽기로 했다. 오늘 수원가는데 죽여 봐야 시간도 많이 걸리니 모험을 걸자. 어차피 죽을 여자고 실종 명단이 나오면 그때 죽여도 늦지 않다"고 막았다. (이 둘은 내 문제로 다음날 맥주병을 들고 싸우다 현양의 머리가 찢어지기도 했다).

어쨌건 나는 살았고 그래서 그날 일당 5명은 내 눈을 가린 채 트렁크 주수석에 태워 모자를 깊이 눌러쓰게 하고 성남으로 갔다. 그들은 가면서도 나에게 '탈출하고 싶으면 해라, 우리는 파출소도 습격할 계획이고 경찰 죽이는 것이 소원이다', 그러면서 일부러 검은소나 파출소 앞을 지나치기도 했다. 뒷자리에는 두 명이 탔는데 모두 칼을 차 바닥에 숨기고서, 경찰이 잡으면 언제든 저를 수 있게 해두었다.

어느 당구장 앞에서 차를 세운 채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공원 묘지 가서 얘기합시

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말 얘기하러 가는 줄 알았지 그렇게(그랜저 사냥) 하러 갈 줄은 몰랐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는데 그랜저가 한 대 보이자 무전으로 얘기하는 게 "사냥감이 있다. 회쳐 버립니다. 한번 합시다." 딱 그 몇 마디였다. 그러고서 한 명이 내려 확인한 뒤 "경남 넘버인데 3천인 것 같다. 돈 좀 있을 것 같은데" 했다. 그들은 트렁크



해체된 그랜저. 지존파는 차를 분해하듯 인육을 해체했다.



압구정동 아타족. 지존파의 증오 대상이었다.

에서 가스총을 꺼내 별초하는 두 사람(소운·박미자씨 부부)에게 올라갔다. 나는 차 옆에서 기다리게 했다.

언덕에서 말 소리가 들렸다. "저 차가 아저씨 참니까?" 남자가 그렇다고 하자 이번에는 "펑크가 났네요" 했다. 그러자 별초하는 남자가 서서 언덕 밑을 보며 "펑크가 왜 남니까" 하는 순간 그들은 남자의 얼굴에 가스총을 쏘았다. 순간 남자가 얼굴을 잡고 언덕 밑으로 피하는 모습이 보였고 "여보, 피해" 하는

화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소씨 부부를 납치해 밤 12시쯤 영광에 도착했다. 그들은 같은 방법으로 부부를 심문했다. 소운오씨는 무척 부인을 아끼는 듯했다. 자기는 펜찰지만 아내의 기관지천식 환자인데 이를 안에 병원 안가면 죽는다. 돈은 다 줄테니 피해를 주지 말라고 했다. 그들은 태연하게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지 사람 목숨이 아닙니다. 1억만 주십시오" 하고 거짓말을 했다. 소씨가 8천만원을 얘기한 모양이었다. 자기들끼리 '8천밖에 안나올 것 같아, 8천이라도 뜯어내자' 하는 말이 들었다. 그들은 심문이 순조롭게 진행된 듯, 돈 가져오는 방법을 소씨에게 지시했다. 내용은 회사로 전화를 해서 아저씨가 산소 갔다가 음주 운전하고 오다가 사람을 치었다. 젊은이들인데 8천만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한다. 팡주로 8천만원 가져오면 해결하고 3일 안에 돌아가겠다. 이런 거였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소씨를 태우고 사전답사차 팡주를 다녀온 듯했다. 다녀와서는 "회사측과 통화했어, 약속 시간엔 맞춰 가면 돼"라고 했다. 나는 그날 다이어마이트라는 것을 처음 보았다. "무기 챙기고 다이어마이트 꺼내 와라" 그러더니 마루에 열 몇개쯤을 펼쳐 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사용법을 잘 모르는 듯했다. 소씨가 옆에서 연결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4시쯤에가 나를 트렁크 주수석에, 소씨를 뒷자리 가운데 앉히고 두 명이 양옆에서 감시했다. 그런데 도중에 갑자기 평하는 평음과 함께 차 안에 연기가 가득했다. 뒤에서 한 명이 "나 손 나 갔어" 하는 소리가 들렸다. 현양이 좌석 밑에 있는 다이어마이트를 점점하다 뇌관이 터진 모양이었다. 근처에는 농가도 있었고 아주머니들 몇 명이 있었으나 무슨 일인지 물꼬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준비물 다시해 갔

다. 계획을 바꿔 부상한 현양은 남아서 소씨 부인을 지키기로 했다. 약속 장소가 육교 근처였는데 팡주에서는 우리를 본 목격자가 꽤 많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전혀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차 안에서 돈을 가져오기로 한 소씨 회사 직원(심성수 부장)을 기다리는 동안 강동은 "여기서 죽으면 다같이 죽게 되겠지만 살아나가면 꼭로하십시오" 했다. 그래서 "나도 살 가망이 없는 것 같다"고 하자 문상록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존(김기환·26)이 그랬지, 여자 믿지 말라고. 난 이런 것 정말 맘에 안들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칼을 계속 만지작거리던 동은은 내게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탈출하게 되면 이 전화번호 갖고서 신고하라"고 했다. 나는 그냥 "알았어요" 했는데 강은 진짜로 전화번호를 적어서 내 지갑 안에 넣어줬다.

아내를 사랑했던지 소씨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나 돈을 건네받으면서 피랍 사실을 알린 모양이었다. 물론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지만, 8천만원을 받아 집에 도착하자 현양은 마루에 다이어마이트·부탄가스통·칼 등을 옆에 두고 키크이터를 들고 있었다. 경찰이 오면 그걸 쫓아갔던 모양

이다. 우리가 도착하자 소씨 부인은 현양의 어깨를 두들기며 "거봐, 우리 아저씨는 거짓말할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 했다. 소씨 부부는 서로 안고 애들이 살려준다고 했다고 위로했다. 그러나 그날 두 사람은 술을 먹어 죽이게 돼 있었다. 다만 거금을 권 성취할 때문인지, 아니면 그날 맥주며 양주를 많이 마신 탓인지 다소 의견이 엇갈린 듯했다. 한때 살려주자는 의견이 반반까지 갔으나 상륙이 "난 이런 거 맘에 안드니 내리보내"라고 못박았다. 그러자 동생 들(백병욱과 강문섭)이 "두 분이서 내려가 주무십시오, 내일이면 아파트 앞에 가 있을 겁니다" 하면서 부부를 지하로 내려보냈다.

다섯 명이 마루에서 술을 마시는데, 나도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두 사람이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였다. 아침이 되자 현양은 "오늘 일이 있으니 준비하십시오" 했다. 그들

은 부부에게 술을 먹이기 위해 지하실로 내려갔다. "남자는 총으로, 여자는 칼로 죽여. 누가 먼저 죽는지 내기하자"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올라와 "형, 땀었어"라고 하자 "준비해"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커다란 고무 다리에 칼·도마·도끼 같은 것을 담아서 지하로 내려가면서 나더러 들어오라고 했다. 나에게는 공기총을 주었다. 소씨 부인은 옷이 벗겨져 있었다.

현양이 총을 달라고 해 주었다. 현양은 남자를, 문섭은 여자를 맡게 돼 있었다. 현양은 약한 모습 보이던 안된다, 여기서 모든 게 끝



지존 허망. 왼쪽부터 강동은 백병욱 강문섭 김현양 문상록 이경숙.

난다고 말했다. 문 밖에선 세 명이 소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현양은 내 오른손을 내밀라고 하더니 내 손을 방아쇠를 당기는 모양으로 만들었다. 나는 쏘는 생각도 없었는데 총이 내 손이 닿자마자 탕! 하는 소리가 났다. 내가 악! 하고 소리치며 뛰쳐나오니 현양이 펜찰다며 "선영씨 잘했으니 이제 쳐다만 보세요" 했다. 그러나 그때부터가 문제였다.

"내일 다시 먹을테니 냉장고에 넣어두라"

두 시체를 해체하는 작업은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 다라이가 들어갔다. 내가 고개를 외면한 채 벌벌 떨고 있으니 한 명이 칼을 대며 "쳐다 봐, 안보면 너도 똑같이 죽인다" 하며 머리채를 끌고 들어갔다. 현양이 먼저 칼로 소씨의 팔을 내리쳤으나 잘 안되자 이번에는 도끼로, 그래도 안되자 해부용 칼로 살을 잘라 벌어지게 했다. 그렇게 해서 도끼로

내리쳐곤 했다. 그 옆에서 문섭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자를 해체했다. 그렇게 해서 팔·다리를 모두 고무 다리에 담게 했다. 지하실에는 피가 흥건했다. 그걸 지켜보는 그들의 표정은 다들 초침이 없이 회색회색 웃는 모습이었다. 인육을 먹는 것도 그때 처음 보았다. 현양은 내게 배신한 동생(송봉우·18)을 죽일 때 지존이 시켜 처음으로 물면서 인육을 먹었다고 말했다. 현양은 여자의 한쪽 가슴을 잘라서 "사람 고기 한번도 안먹어봤죠? 맛있어요" 하며 내 앞에 내밀었다. 그의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는 살점을 검정 비닐에 싸더니 동생들에게 "내일 다시 먹을 테니 냉장고에 넣어두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시체가 잘 안타 밤새 애크를 먹었다. 동생들이 불이 자꾸 꺼진다고 하자, 강동은은 그러면 내일 연통을 새로 사다가 하자고 했다. 그날은 현양이 다친 손을 치료하러 병원에 가는 날이었다.

내가 따라가도 되냐고 묻자 현양은 선뜻 "그러세요" 했다. 그러면서 현양은 어젯밤 일은 잊어버리라고 하면서, 오늘 1차로 병원 가고 2차는 겨울 이불 사고 3차는 노래방 간다고 스케줄을 일러주었다. 난 나대로 탈출 계획을 생각했다.

병원 가는 길에도 현양은 전에도 그랬듯 '탈출하고 싶으면 말해라, 그러면 칼을 줄테니 내 목에 칼을 꽂고 가라. 나는 형제들을 배반 못한다. 그러니 나를 죽이고 가라'는 식의 말을 되풀이했다. 영광 기독교병원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거의 모든 아줌마들이 현양과 아는 체를 했고, 현양은 이들에게 "교통사고로 다쳐서 왔다"고 했다.

나는 현양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탈출한다고 마음 속으로 다짐했다. 그런데 현양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그가 일어서 나를 한번 흘금 보고는 진찰실로 들어갔다. 순간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나는 천천히 입구 쪽으로 걸었다. 그리고 현관을 벗어나자마자 병원 밖으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아탔다. 그러고는 그날 밤 서울로 올라와 친구들과 함께 서초경찰서로 달려갔다. ■

12.12 기소유에 처분에 대한 법적 검토

손동권 (경찰대학 교수)

I.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 Opportunitätsprinzip)와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 Legallitätsprinzip)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247조 1항에서 검사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양형 조건의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범죄 혐의가 있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범죄 혐의가 있고 소송 조건이 갖추어진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의무적으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을 기소법정주의라 한다. 양법제의 장단점에 관하여 우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기소법정주의는 공소권행사에 있어서 법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공소권의 행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초범자와 같이 개선의 여지가 큰 범죄자를 모두 형사 처벌하여 전과자를 양산시키고 무의미한 공소제기와 무용한 심리, 재판 및 집행으로 인하여 소송 경제에 반하는 단점이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기소편의주의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범죄인을 조기에 석방할 수 있고 무용한 심리, 재판 및 집행을 절약함으로써 소송 경제상으로 유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검사의 소추재량권이 적정하게 행사되지 않을 경우 법앞의 평등 원칙이 침해되고 또한 검사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공소권 행사가 왜곡될 우려가 크다고 한다.

양법제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다수 견해는 개선의 여지가 큰 피고인을 위해서나 소송 경제의 면에서 유리한 기소편의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동운 교수는 우리 헌법이 법앞의 평등원칙(헌법 제11조 1항), 형사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제27조 5항) 및 범죄피해구조 청구권(제30조)을 선언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소추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즉 원칙적 기소법정주의), 제한된 범위에서 기소유예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즉 예외적 기소편의주의) 이해하여야 한다고 한다. 신동운 교수의 관념은 독일의 현행 법제와도 비슷하다. 독일의 형사소송법은 범죄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이 갖추어진 사건에 대해서 기소법정주의를 원칙으로 선언하되(제152조 2항),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는 여러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기소법정주의의 결점을 보완하고 있다. 기소편의주의가 적용되는 대상은 ①경미한 범죄(Vergehen)의 경우(제153조, 제153a조), ②법원이 형면제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제153b조), ③ 국외 범죄의 경우(제153c조), ④정치적 범죄의 경우(제153d조)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편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①과 ②의 경우에는 검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본안심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법관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③과 ④의 경우에는 법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 범죄의 경우에

는 개별하위직 검사가 기소유에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연방 검찰청 검사장(Generalbundesanwalt)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법관의 통제를 받게 하거나 책임 있는 검찰 총수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독일에서는 검사가 기소한 경우에도 법원이 역으로 검사의 동의를 얻어 절차를 조기에 중지할 수도 있다. 즉 독일에서는 검사가 기소하였다고 해서 법원이 소송 경제에 반하여 반드시 심리 재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기소법정주의의 단점은 독일에 관한 한 적용될 수 없다.

필자는 독일식의 기소법정주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독일의 법제는 한편으로 검사에 의한 기소유예처분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검사가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검사의 동의를 얻어 절차를 조기에 중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소편의주의의 모든 장점을 그대로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의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동의를 요하도록 현행의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우리 나라에서 검사가 별 제한 없이 단독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제255조 1항) 법원은 이에 대하여 반드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해 주어야 하는(제361조의 4호) 현행 제도도 재고되어야 한다. 이는 신동운 교수가 지적하듯이 공판절차까지도 검찰사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검사의 공소취소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II. 12.12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법률적 검토

검찰에 의한 12.12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정치적 논란이 분분하다. 야당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결정을 하였다고 심하게 비판하고 있다. 본인은 법학자로서 이번 처분이 과연 정치적으로 결정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다만 법학자의 입장에서 동 처분에 대해 법학적 관점에서만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번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기소법정주의를 취하는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도 정치 범죄에 대한 소추가 중대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심대한 공공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독일 형소법 제153d조). 더욱이 기소편의주의를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이와 같은 기소유예처분이 형식적으로 가능함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의 기소유예처분을 법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수긍하기 어려운 특별한 점이 여럿 있다.

(1) 먼저 전두환 前 대통령에 대하여 검찰은 균형법상의 반란수괴, 불법 퇴진, 지휘관 계엄 지역 수소 이탈, 상관 살해, 초병살해 등의 죄목을 인정하였다. 과히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들의 인정이다. 이러한 중죄의 경합범에 대해 사법부인 법원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하여 범죄자를 더 이상의 절차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자유형,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까지 감경되어야 비로소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정형이 중한 위에서 기술한 여러 행위의 경합범에 대하여 국가 발전에 공헌한 이유를 들어 그 정도 가지 감경되기는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하물며 사법부도 아닌 행정부인 검찰이 이러한 중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아예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은 아무리 형법의 양형 규정을 확대해석하여도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2) 기소유예처분은 범죄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다. 즉 범죄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해

춤으로서 자기의 범죄를 반성케 하고 구속상태의 수사 및 재판인 경우에 이를 통해 조기에 그를 석방함으로써 재사회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전두환 노태우 前 대통령은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하였고 이번의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의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기소유예처분은 형사 정책적으로 무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의자의 무죄주장을 확인도 하고, 그의 불만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도 기소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옳았다(타면으로 피의자들이 무죄임을 진정으로 확신한다면 그들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옳다).

(3) 더 나아가 피의자에게 군사반란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내린 이번의 검찰에 의한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법원이 정승화씨에 대하여 내린 내란방조의 유죄판결과도 저촉된다. 따라서 순수한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법원도 검찰에 의한 이번의 기소유예결정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기존의 법원이 내린 사실인정과 이번의 검찰이 내린 사실인정 중에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가리기 위해서도 검찰은 기소하여 법정에서 사실을 확인하여야 했다.

III.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 의한 이번의 기소유예결정은 고소인은 물론 피의자에 의해서조차도 전면적으로 지지 받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법원이 내린 정승화씨에 대한 유죄판결과도 모순이 된다. 이와 같이 소송관계인의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전면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이번의 기소유예처분은 법적 관점에 제한해서 본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뜨거운 감자의 공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이 옳았고 또한 넘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난의 화살을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우리 나라 검찰의 위상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의 사건을 계기로 별 제한 없이 단독으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는 현행의 우리 나라 기소편의주의를 폐기하여야 한다. 아무런 절차적 통제 없는 기소편의주의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남용될 우려가 항상 상존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기소유예나 공소취소의 경우에 검찰과 법원이 서로 통제케 하는 제도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있어 검사 아닌 법조인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이 참여하는 제도의 창설도 고려해 볼 만하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검찰

- 검찰권 행사의 형평성에 관하여 -

이석범 (변호사)

I. 머리말

문민정부 하의 검찰은 이제 무기력의 수준을 넘어 거의 아사(餓死) 직전에 놓여있다.

과거 독재정권 아래에서부터 소위 “권력의 시녀”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검찰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초기에 “부정부패의 척결”, “국가기강의 확립”이라는 2가지 당면과제를 부여받고 있음을 자임하고 사정과 개혁의 선봉으로 자처하면서 역사적 소명을 다하였던 결과 국민들도 새롭게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가슴뿌듯한 자부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검찰이 12.12 사건을 기소유예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을 보고 그러한 검찰의 자부가 얼마나 가소로운 것인가를 서글프게 느끼게 한다. 검찰은 영영 국민들의 사랑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하는, 아니 받을 수 없는 천덕꾸러기인가?

정녕 검찰은 “거악(巨惡)은 편히 잠들지 못하리라”는 불굴의 정의감으로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엄격하고 공정하여 평등한 법 적용과 집행은 통하여 무엇이 정의인가 과감히 선언하는 정의의 파수꾼이 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리하여 국민 누구 나가 검찰을 신뢰하고 굴경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자랑스러움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인가?

그러나 이 모든 희망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적 격변기마다 검찰이 보여준 그 불가사의한 변신과 호도에 무감각해진 지 오래이다.

II. 검찰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1. 검찰의 의의와 성격

(1)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²⁾ 즉 검찰은 범죄수사로부터 재판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여 형사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다.

검사가 행사하는 검찰권은 행정권에 속하기 때문에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으로서 국가의 행정목적에 위하여 활동하지 않을 수 없지만 형사사건의 대부분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종결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권의 행사는 형사사법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검찰이 행하는 검찰권이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검찰권에 대한 영향은 직접 사법권에 미치게 되며 사법권 독립의 정신은 검사에 대하여도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찰은 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사법기관인 이중성격을

1) 김진화, 성숙한 문민검찰로 변신, 시민과 변호사, 1994.2. 70쪽, 서울지방변호사회, 1994

2) 이재상, 형사소송법, 90쪽, 박영사, 1987

을 가진 기관이며, 엄격히 볼 때에는 사법기관(Organ des Rechtssprechung)은 아니지만 오로지 진실과 정의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준사법기관(準司法機關)이라고 해야 한다.³⁾ 이와 같은 검찰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검사에게는 법관과 같은 자격을 요구하고 그 신분을 보장하면서 검찰을 단독제의 관청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2) 그러나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검찰의 독선 내지 검사파쇼를 경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검찰은 행정과 사법의 중간에 위치하여 행정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독립성이 요청되고, 독립성이 보장되면서 자의와 독선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서로 모순되는 요청을 충족시켜야 하는 바, 이를 검찰의 조직 면에서 조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검사 일체의 원칙과 검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이다. 그 중 특히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유지 및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의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려는 데 주된 이유가 있다. 그리하여 경찰청법(제11조 제1항)에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상명하복관계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그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검찰은 1인제 관청으로 각자가 자기 책임 아래 검찰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은 진실과 정의에 구속되어야 하고, 검찰의 정의와 진실에 대한 의무가 상명하복관계에 의하여 깨뜨려진다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이 가지는 인적, 물적 독립성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의 상명하복관계는 적법한 상사의 명령에만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검찰은 자기의 법적 확신이나 양심에 반하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서는 안된다고 보아야 한다. ⁴⁾

(3) 해방 후 자유당정권 시절만 하더라도 검찰은 확고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격변기 속에서 국가의 법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당시 수사 일선에서 활약한 많은 선배 검사들의 이름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호연지기가 있어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도 그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임영신 상공장관 등을 구속한 최대교 검사장 등 빛나는 이름들을 우리는 자랑스러워 삼고 있다.

군사독재 정권 아래에서도 김종필씨를 증권파동의 주모자로 구속하려던 강태훈 검사나 인혁당 사건의 수사조작을 거부한 이용훈 검사, 시국사범으로 구속된 학생의 기소를 거부하고 사표를 던진 구상진 검사 등 자랑스러운 검사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 외에도 널리 이름이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권력에 항거하여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검사들,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많은 검사들이 있어서 우리의 검찰을 지탱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5.16 쿠데타, 10월 유신, 5.17 쿠데타 등으로 집권한 군부세력은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강권정치로 질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들은 당연히 검찰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사영하려고 하였고, 또 그 목적에 유용한 인물들을 검찰수뇌부로 기용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인물들은 제거해 왔다. 일개 군법무관이 검찰총장 자리에 앉지 않나, 검찰총장이 유신의 선봉에 서고, 검찰 총장 출신이 법

3) 이재상, 전게서, 92-93쪽

안상수, 검찰, 앞에서 깨어지는 아픔,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45쪽, 1993.제2호, 역사비평사, 1993

4) 이재상, 전게서, 96-97쪽

무장관, 안기부장,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어 정권유지의 첨병이 되는 마당에 검찰의 군사법권이 온전히 보전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상당수의 검사들이 거대한 독재정권의 힘을 이기지 못하여 이에 순응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체질이 바뀌어갔다. 그리고 그런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이 출세가도를 달리고 검찰의 수뇌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정치권력에 협조하고 정치권력이 주는 대가를 나누어 갖는 파행적 형태의 검찰상이 전개된 것이다.

이리하여 그 중립성이 상실됨으로써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았고 또 지나친 권위주의, 관료주의 때문에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 위와 같은 검찰의 잘못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하고 검찰인들은 그 질책을 고개숙여 받아들이고 깊이 자성하여야만 한다. 5)

2. 정의에 어긋난 검찰권 행사의 유형⁶⁾

가. 수사행태에 따른 유형

(1) 표적수사 :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나 사정개혁이라는 명목에서 야기된 갈등을 사후에 정치적으로 보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권이 행사된 것이라는 의구심이 짙은 사안.

① 박재규 의원 사건 - 3당 합당 이후 여당의원이 된 박 의원은 자신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식물방제협회 이진영 회장이 1990. 1.22.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4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당시 박의원의 구속에 대해 '부패국회의원'을 제거, 새 여당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보는 견해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 검찰권의 행사에 대한 의혹이 불식된 것은 아니었다.⁷⁾

② 박철언 의원 사건 - 슬롯머신업계 대부 정덕진 형제로부터 비호의 대가로 금 5억원을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철언 의원에 대한 수사는 1992년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반 김영삼 쪽에 섰던 박의원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③ 박태준 前 포철회장 사건 - 대검중수부(김태정 검사장)가 박태준 전 포철회장에게 뇌물을 준 기업체 관련자에 대하여 1993. 6.7 소환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수사에 착수한 것은 정치적 성격이 짙은 이 사건의 수사과정을 보다 확실하게 관리, 장악하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

박 전 회장이 사법처리될 경우 정부투자기업인 포철의 과장급 이상은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만큼 박 전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것이 확실시되며, 이 경우 박 전회장의 비자금 부분 의혹 해소에 쏠린 국민의 눈길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여전히 숙제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8)

④ 한호선 前 농협회장 사건 - 의혹이 부풀려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기업이나 단체의 비자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기피하고 있었다. 검찰의 이런 수사행태는 엄정해야할 국가

의 형사소추권 발동을 정치권력의 입장을 고려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정치권과 재야 법조계 등 각계의 광범위한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호선 농협 중앙회장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김태정 검사장)는 1994. 3. 7. 한회장의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는 확대하고 있으나, 한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민자당 14대 총선후보 110인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되었다.⁹⁾

(2) 방목(放牧) 수사 :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에 국민의 관심이 쏠렸으나 정작 검찰은 내사 종결이나 무혐의처분 결정을 함으로써 오히려 사건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던 사안.

① '기백신'의 의혹은 왜 덮는가?¹⁰⁾ - 아무리 정권 말기의 권력 누수현상이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 국민들로서는 황당하기까지 할 것이다. 이른바 '징코민 의혹'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보사부의 자체감사결과 발표가 그렇다. 1992. 6. 12. 에 발표된 보사부의 자체감사결과는 국민들의 의혹에 또 하나의 의혹을 덧붙였다. 동방제약의 징코민에 맞서 선경제약이 제조, 판매중인 은행잎 제제 기백신에서도 메탄올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보사부가 이런 사실을 이미 확인하고서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기다려 공개한 것은 메탄올 파동의 불똥이 선경 쪽으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한 계산된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② 한양 비자금 축소 수사 의혹¹¹⁾

한양그룹 배종렬 전 회장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범위를 배 전회장의 개인적 횡령으로 한정해 건설업체와 정, 관계간 구조적 비리에는 애써 눈을 감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회사경리간부들로부터 (주) 한양이 매달 일정액수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중 일부만이 배 전 회장의 개인재산으로 관리되어 왔다는 진술을 이미 얻어 낸 것으로 전해져 나머지 비자금에 대해서 정치자금으로 유입되었는지에 대한 자금추적 등의 과감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③ 원전 뇌물 재벌수사 축소 조짐¹²⁾

원자력 발전소 공사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재벌에 대해 미온적인 수사태도를 보이는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1993. 8. 5. 안병화 전 한전사장에게 2억원의 뇌물을 건넨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을 소환해 놓고도 이번 주에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남에 따라 '재벌 감싸안기'적 수사방향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정치권에 대한 수사 확대가 필요한 시점인데도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안 씨에게 2억원을 준 혐의로 구속된 (주) 삼창 회장 박병찬 씨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은 최, 김 회장에 대해 불구속 입건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 투자기관을 포함한 공직자들과 경제사범에 대한 중단 없는 비리척결을 부르짖은 검찰의 거듭된 입장파도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삼성건설(주) 회장 박기석씨와 전 현대건설 회장 정훈목 씨가 안 씨에게 30억원 씩의 뇌물을 건넨 사실이 검찰조사결과 밝혀졌다.

9) 한겨레 신문, 1994. 3. 8.

10) 한겨레 신문, 1992. 6. 14.

11) 한겨레 신문, 1993. 6. 12.

12) 한겨레 신문, 1994. 8.9., 한겨레신문, 1994. 8. 21.

5) 안상수, 전계서, 45-46쪽

6) 1990. 1. 부터 현재까지 각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여 주요한 검찰권 행사에 관하여 필자 나름대로 유형화한 것임.

7) 한겨레 신문, 1990. 2. 14.

8) 중앙일보, 1993. 6. 7.

1994. 8. 20. 기소된 안씨의 뇌물수수사건은 수사과정에 굴곡한 국내거대재벌들의 뇌물공여비리가 잇달아 드러남에 따라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검찰은 이 사건을 안씨 개인비리로 국한하고 관련재벌들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등 법집행에 큰 문제를 드러낸 사실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충격적인 일로 지적되었다.

④ 재벌 여전히 성역, 비리 제재 미온적¹³⁾

재벌그룹이 관련된 대형 비리 사건이 잇달아 터지고 있는데도 - 원전뇌물(삼성, 현대, 대우, 동아), 지하철 부실공사(선경, 건영, 한진) - 당국이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해 '재벌 봐주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⑤ <의화밀반출> 노소영씨 부부 봐주기 수사¹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소영씨와 사위 최태원 씨에 대한 외환관리법 위반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의화밀반출혐의 내용에 대한 수사보다는 이들 부부가 제출하는 자료를 근거로 해명을 들어주는 수사에 치중하고(분산예치금 19만 7천달러 압수와 보호관찰 선고, 집행유예1년) 있다.

⑥ 검찰, 동아건설 비리목인¹⁵⁾

1993. 9. 25. 민주당 제정구 의원에 의하여 폭로된 동아건설의 비리를 검찰이 작년에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이를 폭로하겠다고 동아건설을 협박한 사람을 구속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 동아건설 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형사입건되지 않은 채 공소시효를 넘겼었다.

⑦ 이원조 씨 <내사종결 - "개혁검찰" 문제 있다.¹⁶⁾

대검 중수부가 이 전 의원에 내사종결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 등 정치권과 재야 법조계가 일제히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법 집행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을 빚었다. (김종인 전 의원, 안영모 전 동화은행장으로부터 2억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징역 5년 추징금 2억 1천만원 선고)

(3) 뱀꼬리 수사 :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격으로 초기에 검찰은 의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공언하다가 권력이나 외압에 의하여 나중에는 그 결과가 호지부지되었다고 비난받은 사안.

① 검찰은 뭣하고 있는가?¹⁷⁾

6공 최대의 비리로 번져가고 있는 수서 지구 특혜분양 의혹을 둘러싸고 사실상 검찰을 못미더워하는 갖가지 제안들이 터져나오고 대통령의 특별감사 지시가 떨어지기까지 '수사에 나서지 않을 방침'만을 되풀이 밝혀온 검찰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결국 수서사건 수사는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과 장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및 국회의원 5명, 공무원 1명, 주택조합관계자 1명 등 모두 9명이 구속됨으로써 일단 검찰수사가 마무리됐다.

② 검찰 '상무대 뇌물' 수사기피¹⁸⁾

13) 한겨레 신문, 1994. 10. 4.

14) 한겨레 신문, 1994. 8. 25.

15) 한겨레 신문, 1994. 9. 28.

16) 중앙일보, 1993. 11. 2.

17) 한겨레 신문, 1991. 2. 27. , 한겨레 신문, 1991. 2. 19. , 중앙일보, 1991. 2. 16.

18) 한겨레 신문, 1994. 4. 20. , 중앙일보, 1994. 4. 14. , 중앙일보, 1994. 4. 22.

상무대 이전공사 대금의 정치자금 유입 및 공사수주과정에서 금품로비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전면수사를 계속기피하고 있어 검찰조직의 존재의미를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 조성자금 80억원을 시주한 청우건설 조기현씨가 상무대 사건과 관련 검찰에 피소되었으나 서울지검이 2차례나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고검이 재수사지시를 내리고 국방부가 상무대 특감 결과를 통보해오자 고소제기 1년 3개월만에 조씨를 횡령(189억원) 등 혐의로 뒤늦게 구속하였었다.

③ 검찰, 슬롯머신에 도덕성 먹칠, 수뇌부 연루 파문¹⁹⁾

슬롯머신업계 대부 정덕진 씨 비호세력 수사로 검찰의 숨겨진 환부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검찰 고위 간부들이 슬롯머신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 승용차 등을 상납 받았다는 사실은 형사피의자의 기소권을 독점하며 수사의 주재자를 자처해온 검찰 수사대상이 되어야 할 업자들과 검은 거래를 해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④ 울곡비리 '한정수사'의혹, 대검-뇌물공여부분 진상 못 캐²⁰⁾

울곡사업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11개 무기중개업체 및 방산업체 관계자 12명 소환조사 후에 13명을 추가조사,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 등을 피고발인 조사하여 이종구, 이상훈, 김철우(전해군참모총장), 한주석(전 공군참모총장)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철우 씨에게 3억원의 뇌물을 준 무기중개상 학산실업대표 정의승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으나 현대정공 정몽구 회장, 대한항공 조종건 부회장, 삼성항공 윤춘현 전 상무, 진로건설 박태신 전 사장 등 뇌물 공여자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김우중 회장은 횡령피해자라는 이유로 제외하였다.

(4) 패썹죄 수사 : 공무원으로써 내부비리를 양심선언의 방법으로 폭로하자 권력이 이를 쾌썹히 여겨 검찰이 전격적으로 구속기소한 사안.

① 이문옥씨 구속 '보복' 인상- 검찰주장 사실과 다르다.²¹⁾

검찰이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에 관한 감사내용을 한겨레 신문에 알렸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씨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구속한 처사는 이문옥씨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구속한 처사는 재벌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것이란 정부의 거듭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또 검찰의 조사내용도 이씨가 <한겨레신문>에 제보할 당시 밝힌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씨의 구속은 재벌기업과 정부부처의 비리를 고발한 이씨에 대한 보복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② 한준수 연기군수 1992. 8. 31. 국회민주당 원내총무실에서 양심선언을 통해 "정부는 지난 14대 총선에서 여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금권, 관권 선거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는데 대전지검은 한군수와 임재길 연기지구당위원장을 구속하면서 이종국 충남지사는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²²⁾

나. 수사대상에 따른 유형

① 권력형

19) 한겨레 신문, 1993. 5. 22, 중앙일보 1993. 5. 24.

20) 한겨레 신문, 1993. 7. 14., 중앙일보, 1993. 7. 17.

21) 한겨레 신문, 1990. 5. 17., 1990. 5. 26., 1990. 5. 30.

22)인권보고서 1992. 제 7집, 대한변호사협회, 169쪽, 1993.

- ② 재벌
- ③ 고급공무원

III. 부정의한 검찰권 행사의 원인과 그 시론적 대안

1. 원인

(1) 대통령과 국회의 책임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을 존중하지 않으면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문민정부 하의 검찰이 소위 청와대의 눈치나 살피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문민시대의 검찰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다. (예:상문고 사건)

국회 또한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는 일에 소홀이 하였다. (예:비민주적인 법률의 개폐, 형사소송법의 개정, 특별검사제의 도입)

(2)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과제

과거 독재권력은 소신과 검사를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을 등용하지 않았다. 검찰과 국민을 지키기보다 독재정권의 유지에 노력하고 정치 지향적인 인물들을 임명하였다.

(3) 일반 검사들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출세가적 사고방식이나 권위주의를 불식하여야 한다. 23)

(4) 국민들의 무관심

검찰권의 행사에 무관심했던 국민들도 검찰의 독립이 침해된 데 일정정도의 책임이 있다.

2. 시론적 대안

(1) 검사의 법적, 제도적 대책은 기소독점주의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한,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검사동일체원칙의 수정 등 검찰권의 남용이 지적될 때마다 수차 제기되어 왔으나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과연 전반적인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함께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검찰권 남용에 대한 대책은 미봉에 그칠 수밖에 없다.

(2)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때이다.

직접적으로 검찰권의 부당한 행사로 인하여 침해받은 시민뿐만 아니라 자기와 무관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검찰권의 행사가 형평성을 현저히 잃어 부정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시민들은 이것을 여론화하여 검찰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지되는 체제이므로 결국 검찰권의 부정의한 행사에 시민들이 침묵한다면 검찰권의 위기가 아니라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인 것이다.

23) 안상수, 전계서, 47-64쪽

(사법감시 특론회) 11월 10일
 2171-625 : 스카 : 1038-625 : 445
 사법감시 특론회

1. 목적 : ...

(1) ...

(2) ...

(3) ...

(4) ...

(5) ...

(6) ...

2. ...

(1) ...

(2) ...

참여연대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사법감시센터

인권 기록실		
등록일	번호	페이지
	B5	2

사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한인섭

(경원대 법학과)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기번호	등기일	자료번호

사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한인섭

(경원대 법학과)

I. 문제의 제기

최근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전후하여 경악과 충격을 금치 못하는 일련의 흉악범죄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교통질서의 정비와 같은 몇 분야에서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대상이 되어야 할 조직폭력, 마약사범, 강력사범 등에 대해서는 별반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들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경찰관의 총기휴대근무, 임의동행시간의 연장을 포함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흉악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법정최고형의 구형, 흉악범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이들을 격리시키기 위한 超重警備矯正所의 신설, 공개처형 내지 처형장면의 TV녹화방송 등의 제안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제안중 일부는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편의주의적 법집행이라는 비난에 부닥쳐 이미 폐기된 상태이고, 나머지도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요컨대 하나의 정책적 방안은 그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견제장치를 강구한 다음에 제안 구체화되어야 한다. 대범죄투쟁은 즉흥적, 단기적 충격요법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설정과 일상적인 법집행, 그리고 사회전반의 개혁과 더불어서 진

행되어져야 함을 역설적으로 일깨워주는 셈이다.

강력범죄가 빈발하면서, 특히 전을케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과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차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여기서 가장 궁극적 수단은 두말할 것 없이 死刑이다. 흉악한 범죄자를 남김없이 붙잡아 죽여버리는 것이야말로 흉악범죄에 대한 가장 손쉬운 처방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그리고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사형의 문제는 일시적인 법감정이나 충격요법의 차원에서만 다루어질 차원의 것은 아니다. 모든 인간과 사회의 가장 귀결점이 되는 生命 그자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며,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차원의 형벌이라는 점에서 윤리적, 철학적, 사회적, 법적 검토를 종합하여 판단되어질 문제이다. 따라서 입법자와 법집행자 역시 사려깊고 공평한 자세와 합리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률의 제정, 적용에 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사형문제에 대하여 우리 학계와 실무계는 원론적인 문제제기와 외국의 입법과 판례의 소개수준에 그치고 있는 인상이다. 사실 현행 형법의 제정과 정에서도 사형의 존폐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고, 일련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찬반에 대한 치열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우리 법과 인권의 현주소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하면 지나친 판단일까.

최근의 형법개정작업에서는 사형의 존폐, 존치할 경우의 보완책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사형문제는 수많은 쟁점 중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제기는 별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사형제도의 현실적 중요성과 상징적 의미를 감안할 때 지금보다 훨씬 많은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 글 역시 별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며, 合理的 論議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리와 필자의 제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II. 역사적 . 비교적 검토

(1) 역사적 경향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형벌제도의 대강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에 걸쳐 서구 각국에서 실험, 제도화되었다. 이전의 체형 중심으로부터 자유형으로 형벌의 중심이 이전된 것도 이 시기에 와서였다. 다시 말해 신체적 고통을 공개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군주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형벌양식으로부터, 자유박탈과 강제노역의 부가를 특징으로 하는 형벌양식으로의 변화가 야기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사형제도는 그 중요성이 감퇴되고 기능상의 변화를 겪었다.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경찰, 감옥과 같은 정규적인 범죄통제 기관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까닭에, 다른 제도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형이 널리 각광받았다. 이 때 사형은 단순히 생명의 박탈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육체적 고통의 극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형의 종류도 여러가지였고, 온갖 잔혹한 처형방법이 활용되었다. 또한 집행방법도 공개리에 이루어졌고, 신분에 따라 다른 방법들이 구사되었다. 이러한 사형제도의 자의적, 차별적 행사는 군주의 권력과시와 잠재적 도전에 대한 예방적 봉쇄라는 의미를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절대주의 권력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가 바로 사형빈도가 가장 높았음은 여러 문헌을 통해 쉽게 확인될 수 있다.

이같은 사형제도에서의 과잉의존은 근대사회로의 변화와 전후하여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경찰과 감옥과 같은 정규적인 법집행기관의 제도화를 들 수 있다. 이들 제도는 일상적인 치안의 확보와 범죄예방, 통제를 통해 문제인구(개인, 집단)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통제를 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가장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사회속의 孤島인 감옥에 잡아두면 더이상의 악행은 감행될 수 없다. 둘째, 노동력의 가치가 희소해지고 고양됨에 따라, 문제인구를 죽이고 불구화하기보다, 유용한 사회적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 구금시설의 경우에도 이전과는 달리 수용인구를 무시, 확대하는 데 중점이 놓여있지 않고, 노동과 교육, 종교적 감화 등을 통해 쓸모있고 온순한 인격체로의 재형성(=개선, reform)을 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이 쉽게 발견되어진다. 셋째, 벡카리아를 필두로 한 계몽사상가, 공리주의자들의 사형폐지 내지 제한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구체제 하에서의 형벌의 잔혹성과 자의적인 형집행을 비난하면서, 보다 인도적이고 효율적인 형법과 형벌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형벌의 관대성과 함께 중요시되었던 것은 확실성, 보편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이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인은 절대주의 권력의 붕괴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들 수 있다. 왕정으로부터 공화정 내지 입헌군주정으로의 전환과 함께 사형범죄의 가짓수는 현저히 축소되었고, 그 적용빈도는 더욱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각국의 입법에서 충분히 보여진다. 19세기에 들어 유럽 각국에서는 車刑(wheel), 낙인형, 절단형 등 잔혹한 형벌이 폐기되었으며, 笞刑(flogging) 역시 현저히 축소되었다. 각국은 형집행을 통한 위하효과가 아니라 이전보다 완화된 형법전의 제정을 통해 일반예방을 꾀하게 되었다. 사형범죄의 수 역시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활용되었다.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760년에 사형범죄의 수가 160가지였던 데 반해, 한세기가 지난 1860년대에는 단지 4가지 종류의 범죄(반역죄, 모살죄, 특수방화죄 등)에 대해서만 사형이 허용되었다. 독립후 미국에서는 당시의 관행이었던 臟器切斷(disemboweling) 혹은 斬刑(decapitation)과 같은, 신체적 고문이나 야만적 처벌방식을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이라고 규정하고, 수정헌법 8조를 통해 금지하였다. 이와 같이 18세기 이후 사형제도의 역사는, 비록 전진과 퇴각이 교차되긴 했지만, 제한과 축소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